

연구보고서
2015-01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이병희·강병구·성재민·홍민기

책머리에 부쳐

2015년 한 해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꼽은 신조어는 ‘금수저’라고 한다. 태어날 때 물게 된 금수저, 흙수저를 평생 벗어나기 어렵다는 ‘수저론’은 사회적 좌절감을 담고 있다. 이런 절망과 체념의 이면에는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넘어선 불평등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위협하다.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유인을 약화시키며, 성장의 활력과 사회적 이동성을 줄이고, 경제사회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2015년 9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제출된 ILO, IMF, OECD, World Bank의 공동보고서는 불평등이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4개 국제기구들은 평등할수록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을 억제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체계화 되거나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정책 지향은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본 연구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노동·금융·자산 시장 등에서 분배되는 과정, 조세 및 복지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 다양한 차원의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간 일차적인 분배가 개선되어야 하며, 성과급을 강화하는 기업 정책은 임금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규모에 비해 매우 크며, 자본축적을 지원하는 개발시대의 조세제도를 벗어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공평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앤서니 앳킨슨은 불평등을 줄이는 하나의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최근 분배의 개선을 통해 거시경제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장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분배구조의 다층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열정적인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수행 중에 함께 토론하고 발표한 전문가들에게도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 하 남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	---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이병희)	7
제1절 머리말		7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8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11
1. 기존 연구		11
2. 분석자료		14
3.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19
4. 모의실험을 이용한 요인분해		23
5. 소득 불평등과 기업소득		26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30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3

제3장 근속급과 성과급 : 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성재민)	35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37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44
1. 분석 결과	44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51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4
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홍민기) 57
제1절 머리말	57
제2절 자산통계 현황	58
1. 국민계정의 자산통계	58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자산 현황	61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66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69
1. 금융소득(배당, 이자)	69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	71
3. 소득 불평등과의 관련성	76
제5절 소 결	77
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강병구) 79
제1절 문제의 제기	79
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81
1. 소득의 개념	81
2. 포괄적 소득과세	82
3. 이원적 소득과세	84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87
1.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현황	87
2. 소득과세의 국제비교	96

3. 노동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의 국제비교	101
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103
1. 과세공평성 평가	103
2. 공평과세 방안	107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언	111
제6장 결론 :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123
참고문헌	127

표 목 차

<표 2- 1>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총소득의 제도부문별 구성	10
<표 2- 2> 조사자료별 요소소득의 구성(2013)	17
<표 2- 3> 소득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2013)	21
<표 2- 4> 소득불평등 변화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6~2013) ...	22
<표 2- 5> 요소소득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	25
<표 2- 6>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26
<표 2- 7>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31
<표 2- 8> 가구소득 분위별 공적 이전과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	32
<표 3- 1>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	39
<표 3- 2> 도구변수 추정결과	43
<표 3- 3> 도구변수 추정결과와 국가별 비교	44
<표 3- 4> 임금분위별 성과급제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46
<표 3- 5>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근속기간	46
<표 3- 6>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시간당 임금	47
<표 3- 7> 성과급제의 효과	50
<표 3- 8>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52
<표 3- 9> 임금불평등에 대한 성과급제 확산의 효과	53
<표 4- 1>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60
<표 4- 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민계정 개인자산의 비교 ·	62
<표 4- 3> 분위별 가구 총자산	63

<표 4- 4> 자산분위별 부채 현황	65
<표 4- 5>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자료, 국민계정에서의 소득 비교	67
<표 4- 6> 결합 행렬	68
<표 4- 7>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정(2013)	73
<표 4- 8> 상업용 부동산 운영업소득 추정(2013)	74
<표 4- 9> 기업과 가계의 건설 및 토지자산(2013)	75
<표 5- 1>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2014)	87
<표 5- 2> 비과세 이자소득	90
<표 5- 3> 비과세 배당소득	91
<표 5- 4> 소득세 기본세율	93
<표 5- 5> 양도소득세율	95
<표 5- 6> 주요국의 소득세 및 재산세 세수현황(2012)	97
<표 5- 7>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최고세율의 국제비교(2012)	99
<표 5- 8>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102
<표 5- 9> 소득규모별 조세부담률	104
<표 5-10> 소득공제율 및 실효세율 현황(2013년)	106
<표 5-11>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불평등도 및 조세집중도	107
<표 5-12>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률	109

그림목차

[그림 2- 1] 소득분배의 세 가지 차원	8
[그림 2- 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9
[그림 2- 3] 가계소득 비중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1
[그림 2- 4] 소득분배의 추이	15
[그림 2- 5] 요소소득의 구성비 추이	16
[그림 2- 6] 요소소득 간 상관관계 추이	16
[그림 2- 7] 조사자료별 재산소득 비중의 추이	18
[그림 2- 8] 조사자료별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9
[그림 2- 9]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27
[그림 2-10]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 추이(1997=100)	28
[그림 2-11]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기업 저축의 비중	29
[그림 2-12] 소득 불평등과 기업저축의 비중(2010년)	30
[그림 2-13]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2004년경)	32
[그림 3- 1]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이직률	42
[그림 3- 2] 전체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제 적용자 비중 추이	45
[그림 4- 1] 국가총자산/국민총소득 비율	59
[그림 4- 2]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61
[그림 4- 3] 가구총자산 분위별 각 자산항목의 비중	63
[그림 4- 4] 국세통계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포(2012년 귀속)	70
[그림 4- 5] 최상위 금융소득 집단의 금융소득(배당+이자) 비중 추이	71
[그림 5-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체계	92
[그림 5-2] 소득분위별 1인당 소득	104

요약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1.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하였다. 자영자의 노동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가계소득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하였다.

둘째,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또는 모의실험을 통한 요인분해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복지의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늘어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 이윤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늘어날수록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이 가구조사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소득분배의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시장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2. 근속급과 성과급 : 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연공 임금인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2000년대 중반 크게 확산된 성과급제가 연공 임금인상과 불평등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 이에 따른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고 근속의 순수한 임금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 보면 10년 근속당 5~10% 임금인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 자료에서 관찰된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의 약 1/4~1/3 수준으로, 나머지 3/4 내지 2/3는 (관

찰되지 않는) 능력이나 일자리 특성의 결과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추정된 순수한 근속의 효과는 비슷한 방법을 활용한 미국의 연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성과급이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완화시켰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실제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많이 받았을 사람들에게 성과보상까지 추가하는, 근속급을 보완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인해 중상위 임금불평등 강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속급의 (직무)성과급제로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나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속급을 약화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 더 많은 사람들의 근속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생애임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속급에 성과급이 얹혀져 일 부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형태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한다. 직무성과급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상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개별 기업에 (직무)성과급제 확산이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서구 선진국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나라들이다. 가능한 업종부터 초기업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정책 메뉴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

용하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현재 조사 되거나 포착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향후 보다 온전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로 보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주택자산 상승을 주도하였다.

만약 자산이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은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외 주택, 계약금을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자산의 지니계수는 저축의 지니계수보다 약간 낮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자산은 전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을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 비대칭 관계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미국에서는 소득 1% 수준에서도 비대칭 관

계가 나타는 반면, 한국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대칭성은 매우 높은 소득수준(0.1% 수준)에서만 나타난다.

금융소득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 자료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았고, 이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 건물토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수익률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차익과 토지 양도차익을 추산하였다.

4.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 간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평한 과세는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개발시대의 조세체계를 복지국가시대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Carey and Rabesona(2002)의 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한 결과,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2012년에 각각 16.7%와 31.7%

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추정상의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과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지만,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공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하에서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제 1 장 머리말

제1절 문제의식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늘어나고 있다. 효율과 평등 간 상충관계가 크다(big tradeoff)는 Arther Okun의 주장 이래,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던 국제기구들도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IMF의 Berg and Ostry(2011)는 더 많은 평등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게 됨을 실증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몇 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국가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지속은 소득분포의 평등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이 높을수록 빈곤계층의 건강과 교육 투자를 저해하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외생적인 충격 조정에 필요한 공감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OECD의 Cingano(2014)는 불평등이 중기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평균 증가분인 지니계수 3%포인트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0.35%포인트, 20년 동안 누적해서 8.5%포인트 하락을 가져왔다. 그는 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인적자본 축적으로 설명한다. 불평등이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와

상향 이동을 저해한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가난하고 학력이 낮은 부모를 가진 자녀의 교육수준과 숙련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2015년 9월 4개 국제기구의 공동보고서로 이어졌다(ILO·IMF·OECD·WB, 2015). “불평등은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며… 더 많은 평등이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체계화되거나 구체적인 정책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양한 만큼이나 정책적인 지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한 정책적 논의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일차적인 소득분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LO·IMF·OECD·WB(2015)는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소득이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도 하락하였으며, 개인 간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바뀌게 된 이면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거시경제적으로 소비 부진과 경제성장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의 실증 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켰지만 투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차적인 소득분배의 개선을 제기하는 것은 대안적인 성장모델로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논의만이 아니다. 일차적인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분배를 확대하는 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역사 통계를 이용하여 불평등 논의를 점화시킨 Piketty(2014)는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할수록, 즉 국민소득에 비해 자본(부) 스톡이 늘어날수록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며,

성장이 느려지면 이미 축적된 자본이 더 중요해져서 세습자본주의 경향이 심해진다는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만, 경제력의 원천으로서 자산이 중요하며, 자산의 불평등이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Stiglitz(2015)는 증가하는 부의 상당한 부분이 비생산적인 렌트의 증가 때문임을 강조하며, 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렌트 추구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정태인, 2014; 주상영, 2014). 전병유·정준호(2014)는 생애주기, 가족주기, 전세제도, 주택 금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는 높아서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셋째, 조세를 포함한 재분배정책이 소득분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성을 약화시켜 법인과 부유한 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왔던 그동안의 정책 추진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세 부담의 경감이 기업의 투자나 부유층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기대와 달리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인 재분배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 IMF의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는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최소한 경제성장과 중립적이라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OECD도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raconier and Ruiz-Valenzuela, 2014).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더구나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특징을 가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니계수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2014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활력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정책 대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 Atkinson(2015)이 강조하듯,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힘들이 불평등을 낳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앞서의 세 가지 정책적 쟁점별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처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 가운데 노동의 몫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만 기업저축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미국,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지만 기업저축은 크게 증가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영향이 과소하게 측정되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

-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은 매우 높다. 또한 임금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왔다. 많은 연구들은 산업구조 변화, 기술이나 국제 무역의 변화와 같은 수요측 요인, 고학력화와 고령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이 임금 불평등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와 같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임금 조정 기제를 갖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내 임금 결정기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임금체계가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통념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나 일자리 매칭의 질을 통제하면 근속 보상은 크게 줄어들어서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2000년대 중반 확산된 성과급 또한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이는 근속급을 성과급으로 대체하려는 기업 정책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자산의 집중이나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제4장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집중을 다룬다. 우선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자산/소득 비율이 2000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택자산이 증가한 때문임을 지적한다. 한편 주택자산은 불평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자가 주택자산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반면, 지대수입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자산은 임대료와 매매차익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소득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국세통계에서 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차지하여 금융소득의 분포가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분포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순영업소득 규모는 국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규모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재분배의 압력은 높아진다. 우리 사회도 복지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담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증세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제5장은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 구조를 분석한다. 자본축적과 저임금 노동을 지원하는 개발시대의 특성으

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조세제도는 과세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시정하는 효과도 미약하다.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국제 비교 분석은, 자본소득세율을 과대추정하는 방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 100분위별 과세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소득공제가 역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 2 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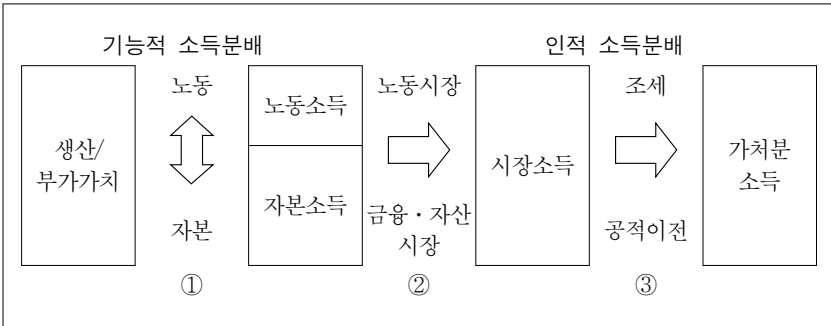
제1절 머리말

Atkinson(2015)은 불평등을 줄이는 하나의 묘책(one-size-fits-all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행되며, 시기와 장소에 따라 불평등의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소득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가구) 간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간 분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국민소득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서,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득 분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는 시장에서의 일차적인 분배가 악화된 탓이 큰데,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에만 주목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Lee and Rusconi(2014)는 소득분배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개인 또는 가구별로 소득이 분배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조세 및 공적 이전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글은 이 개념도를 차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제2절

(그림 2-1) 소득분배의 세 가지 차원



자료 : Lee and Rusconi(2014)

에서는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거시적인 소득분배를 다룬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3절에서는 가구 간 요소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증가한 현상이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양한 요인분해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는 기업소득의 증가를 고려하면 소득 불평등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제4절에서는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상의 발견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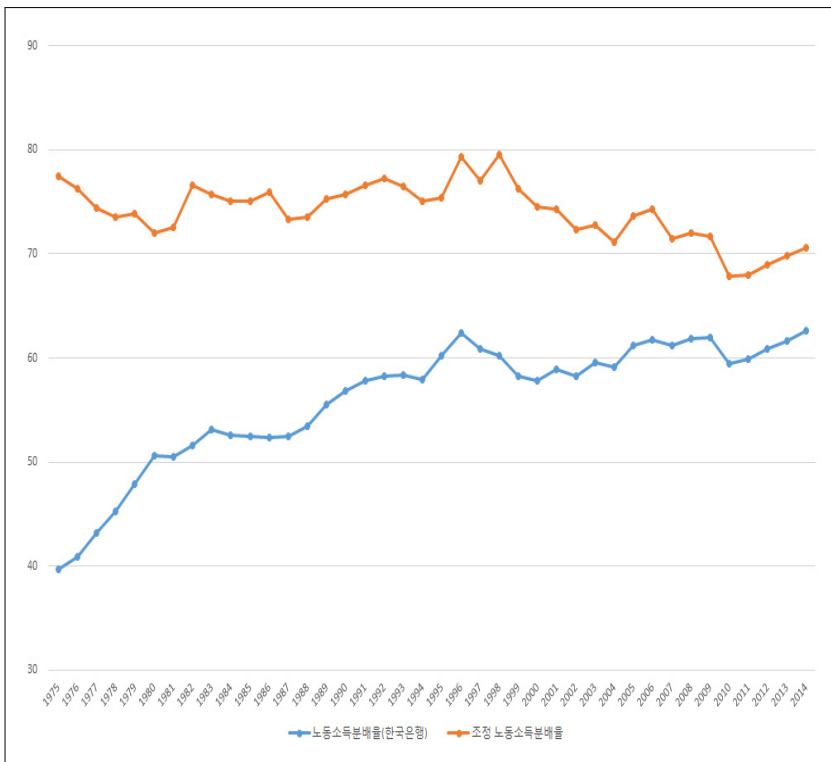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생산요소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요소비용 국민소득(N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누가 부담하고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순생산 및 수입세, 자본 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

는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여 구한다. [그림 2-2]를 보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소폭 감소한 수준에서 변동하며, 2014년 62.6%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62.4%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정의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의 전부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에는 생산에서 발생한 이윤뿐만 아니라 소유주 또는 다른 가계 구성원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도 포함한다.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 감소와 임금노동의 증가가 진행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을 추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병희(2015a)는 자영업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는 방법이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이 방법으로 조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게 하락하였다.¹⁾

<표 2-1>에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 간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국민총소득(GNI)은 총본원소득과 동일한데, 총본원소득은 가계·기업·정부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면 국민순소득(NNI), 즉 순본원소득이며, 순생산 및 수입세를 추가로 제외하면 요소비용 국민소득(NI)이다. 한편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소득은 자본소득으로만 구성된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개인 영업잉여 중 자본소득, 순재산소득)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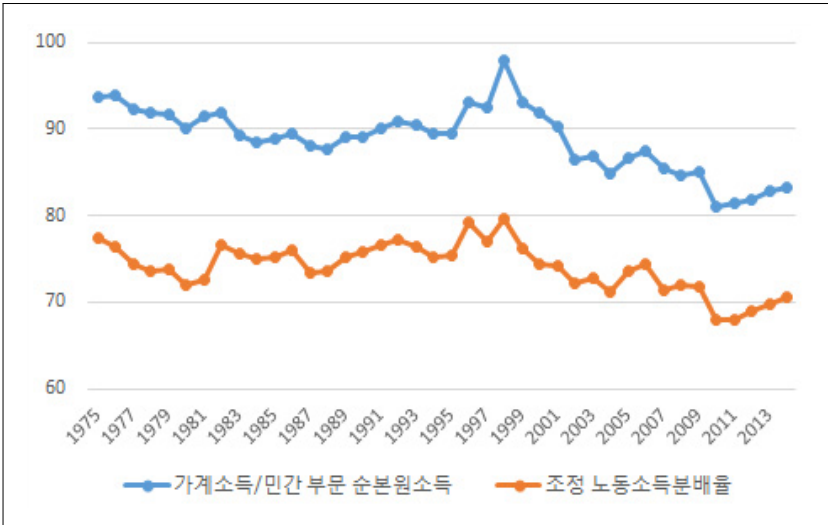
<표 2-1>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총소득의 제도부문별 구성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고정자본소모
	국민소득(NI)			고정자본소모	
	노동소득	자본소득			
가계 소득	피용자보수	개인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기업 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정부 소득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	

1) 이병희(2015a)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자영부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자영자의 노동소득만이 아니라 임금소득 하위 90% 근로자의 노동소득도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서비스화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은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낮으며, 1996~2012년 간의 하락폭은 비교대상국 21개국 가운데 둘째로 크게 나타난다.

(그림 2-3) 가계소득 비중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소득의 변화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가계 순분원소득이 민간부문 순분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1996년 가계 순분원소득은 민간부문 순분원소득의 93.1%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83.2%로 감소하였다. 강두용·이상호(2013)는 2000~10년 동안 가계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준다.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1. 기존 연구

노동소득분배율이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지만, 둘 간

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말할 뿐이다. 불평등은 노동-자본 간의 분배뿐만 아니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각각이 개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불평등을 지니계수로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G = LS \times C_L + (1 - LS) \times C_K$. 즉 지니계수 G 는 노동소득분배율 LS , 노동소득의 집중계수 C_L , 자본소득의 집중계수 C_K 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소득의 집중계수는 개인을 총소득 기준으로 정렬하였을 때 노동소득의 지니계수를 말한다. 생산요소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면, 지니계수는 생산요소별 집중계수를 각각의 구성비로 가중한 합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곧바로 개인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개인의 평균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하락하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득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소득 집중계수가 증가해야 한다. Adler and Schmid(2012)는 자본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소득분배율이 동일하더라도 자본소득과 총소득 간의 관계, 즉 자본소득의 집중계수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관계를 가진다면,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대로 총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이 음의 관계를 가진다면,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다. 대체로 총소득이 많을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할 과제다.

생산요소 간 거시적인 분배와 소득불평등 간의 경험적인 연구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하는 방법과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전병유, 2014).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Daudey and Garcia-Penalosa (2007)는 1970~94년에 걸친 39개의 국가별 집계자료의 패널을 구성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으면 개인 지니계수와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Checchi and Garcia-Penalosa(2010)은 1960~2000년에 걸친 11개 국가 패널을 구성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니계수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Schlenker and Schmid(2014)는 17개 EU국가의 가구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이 가구 총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이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and Rusconi(2014)는 G20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하락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가구조사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Fräßdorf, Grabka, and Schwarze(2011)는 Shorrocks의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가처분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자본소득이 소득 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Garcia-Penalosa and Orgiazzi(2013)는 지난 30년간 6개국의 소득 불평등을 요인분해하여, 불평등 증가에 미치는 요인들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임금이 불평등의 가장 주된 요인이지만,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상쇄하는 나라가 있다. 또한 일부 나라에서는 자영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하며, 자본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도 있다. Adler and Schmid(2012)는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가구 시장소득의 더 높은 불평등과 관련있음을 서술적으로 제시한다. Rehm, Schmid, and Wang(2014)은 독일에서 2000년대 초반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한 주된 요인은 자본소득 분포의 변화임을 요인분해를 통해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소득 불평등 증가가 자본소득분배율 증가와 독립적이지 않으며,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는 전병유(2014)가 유일하다. 어떤 가구조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데, 고소득층의 과소대표 문제와 재산소득의 과소 보고 문제가 작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정태적 요인분해를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가 가구소득의 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2. 분석자료

생산요소 간의 일차적인 분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요소소득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구조사는 요소소득의 구성비, 요소소득의 집중도, 가구소득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고소득층의 누락 문제를 안고 있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득분배 지표의 조사원인 가계동향조사는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과소 측정되는 문제가 크다(김낙년, 2013). 이 글에서는 고소득층의 과소 대표 문제와 재산소득의 과소 보고 문제가 완화된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가계금융복지조사(2011, 2013)²⁾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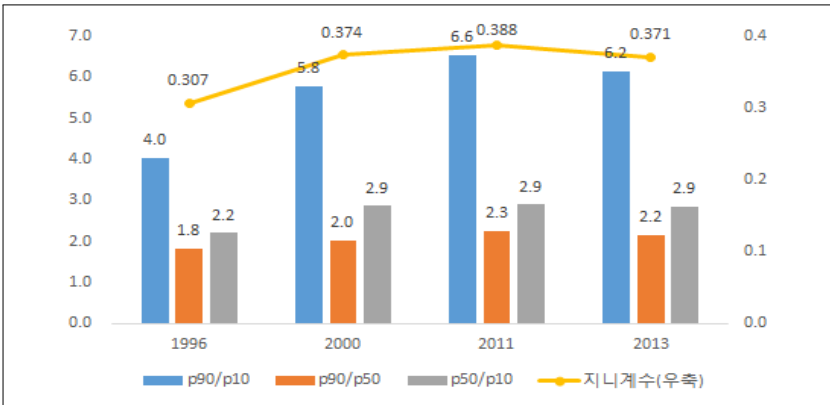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노인 인구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구주 연령이 65세 미만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기능적 소득분배의 요소소득에 대응하는 일차 소득(primary income)을 사용하였다.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별도로 조사된 부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조사에서 농림축어업소득이 별도로 조사되었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작으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였다. 한편 각 소득은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화하고,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분석단위가 가구이므로 자료의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우리가 사용한 자료에서 소득분배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림 2-4]는 가구소득의 불평등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지니계수를 보면, 1996년 0.307에서 2000년 0.374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급증한 것이다. 2000년대에도 불평등 수준은 감소하지 않아서 2011년 0.388로 더 증가하다가 2013년에 소폭 감소한 0.371을 기록하고 있다.

분위수 배율을 보면, 1996~2000년 간 중위소득 대비 90분위 가구소득이 1.8에서 2.0으로 증가하였으며, 10분위 가구소득 대비 중위소득은 2.2

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년도에 연간 소득을 조사하므로, 조사가 실시된 해는 각각 2012년, 2014년이다.

[그림 2-4] 소득분배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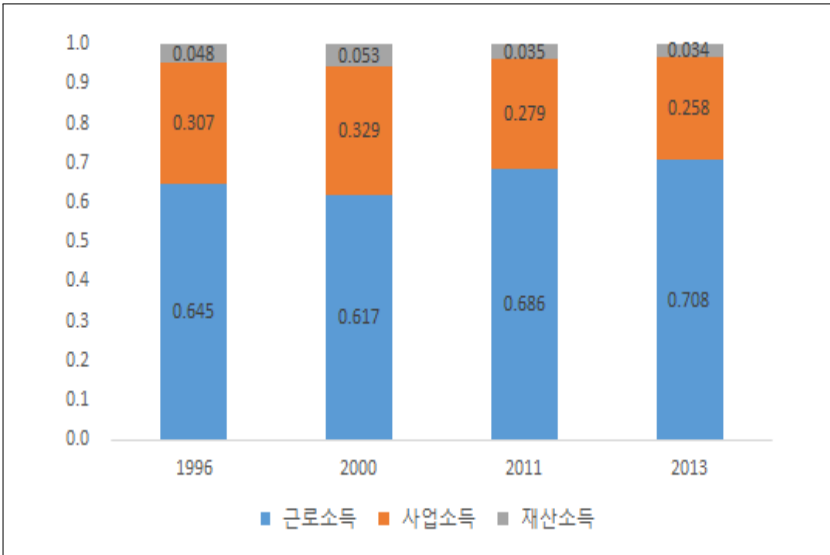
주: 가구주가 생산가능인구인 가구의 균등화한 일차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에서 2.9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불평등 증가는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하위 소득 가구의 소득 침체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2011년 p50/p10은 2000년과 동일하며 p90/p50은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0~11년에는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에 의해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2011~2013년에는 p90/p50이 소폭 감소하고 p50/p10은 동일하다. 이 시기에 불평등 수준이 하락한 것은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가구의 일차소득에서 요소소득별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자.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림 2-5]를 보면, 가구 일차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임금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의 자영 창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가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소득 비율은 2000년에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은 요소소득 간 상관관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재산소득은 다른 요소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상관계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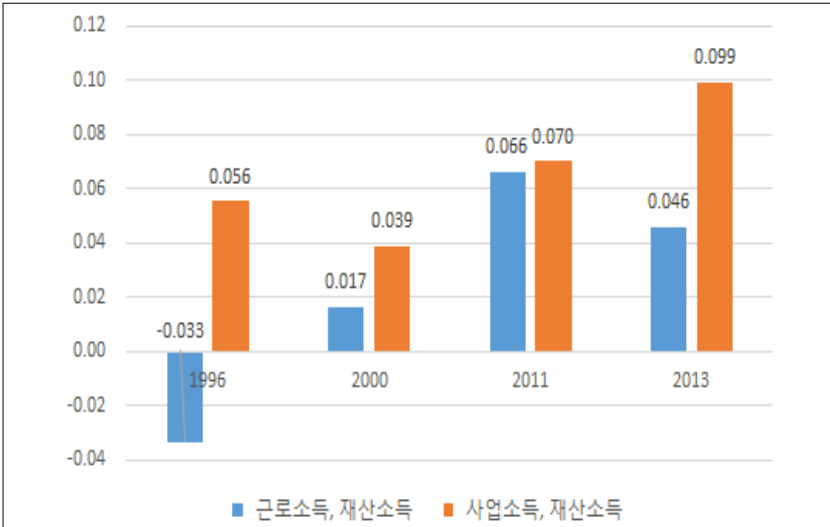
16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그림 2-5) 요소소득의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2-6) 요소소득 간 상관관계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러나 가구조사의 요소소득 구성비는 국민계정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우선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과소 조사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표 2-2>는 2013년 각 조사통계의 재산소득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국민계정에서 순본원소득은 요소비용 국민소득과 동일한데, 순본원소득의 요소소득 구성을 가구조사의 근로소득, 자영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은 순본원소득의 26.7%를 차지한다. 법인과 정부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을 제외하고, 가계부문으로 한정하면 재산소득은 순본원소득의 10.9%로 나타난다. 국민계정의 재산소득에는 개인이 실제로 수취하지 않지만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처리하는 귀속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귀속소득을 추정한 홍민기(2014)에 따르면, 임료에 포함되는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중개서비스는 2013년 가계 순본원소득의 3.4%에 해당한다. 귀속처리되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가구조사의 순재산소득은 국민계정의 가계부문에 비해 과소 조사됨을 알 수 있다.

국민계정과 가구조사 간에 요소소득의 구성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추이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7]은 일차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1996년 16.3%에서 2014년 26.0%로 증가하였다. 법인의 영업잉여가 크게 증가하

<표 2-2> 조사자료별 요소소득의 구성(2013)

(단위: %)

	국민계정		가구조사
	국내부문	가계부문	
근로소득	61.7	75.0	70.8
자영소득	11.6	14.1	25.8
재산소득	26.7	10.9	3.4

주: 1) 국민계정 국내부문의 순본원소득 = 근로소득(피용자보수) + 자영소득(개인영업잉여) + 재산소득(개인 순재산소득 + 법인 순재산소득 + 정부 순재산소득 + 법인 영업잉여 + 정부 영업잉여).

2)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순본원소득 = 근로소득(피용자보수) + 자영소득(개인영업잉여) + 재산소득(개인 순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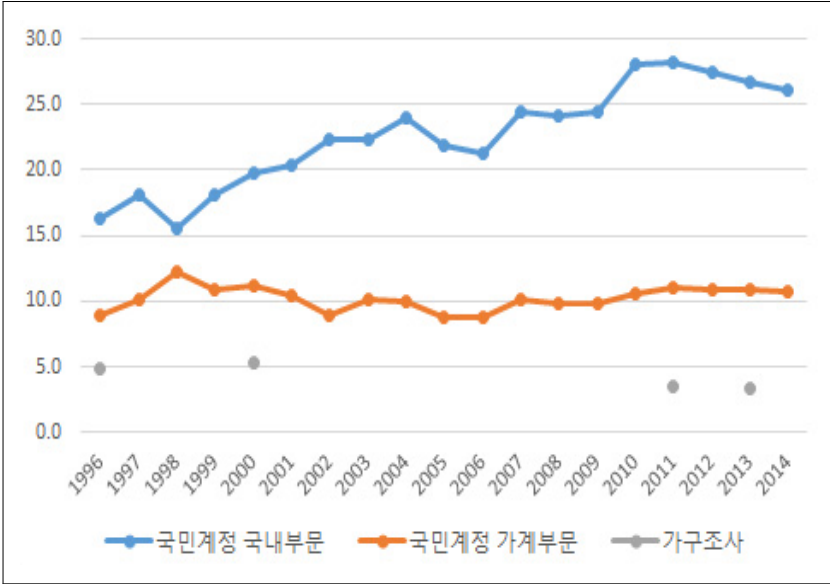
3) 가구 일차소득 = 근로소득 + 자영소득(사업소득) + 재산소득.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2-7) 조사자료별 재산소득 비중의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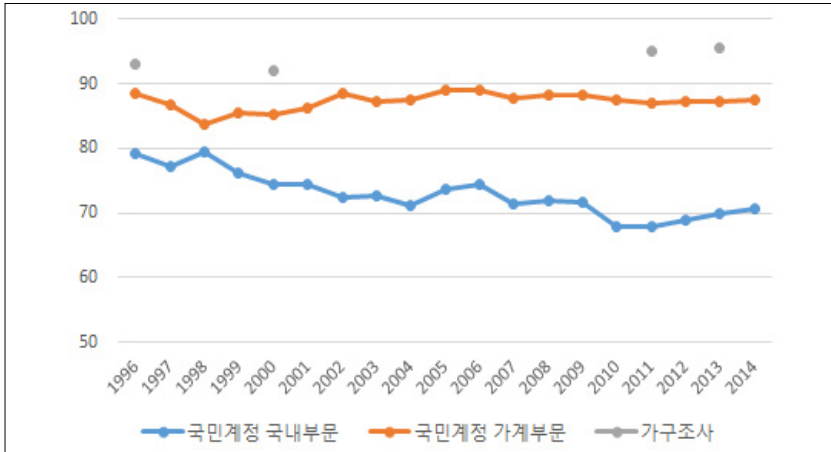
였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계정 가계부문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10%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을 할 뿐이다.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1996년 4.8%에서 2013년 3.4%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국민계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국민계정 가계부문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에 하락하다가 87~88% 수준에서 등락한다. 가구조사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소폭 하락하였지만, 이후에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한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국민계정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계정과 가구조사 간에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자체가 반대로 나타난다. 요소소득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가구조사뿐이므로, 이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8) 조사자료별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주: 자영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3.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생산요소 간의 일차적인 분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Shorrocks (1982), Lerman and Yitzhaki(1985)가 도출한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총소득이 요소소득 k 의 합이라면,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소득원천별 요인들로 분해할 수 있다.

$$G = \sum_{k=1}^K S_k G_k R_k$$

이 때 S_k 는 요소소득 k 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G_k 는 요소소득 k 의 지니계수이고, R_k 는 요소소득 k 와 총소득 간의 지니 상관계수 (Gini correlation)³⁾를 말한다. G_k 와 R_k 의 곱인 $G_k R_k$ 는 총소득으로 정렬

하였을 때 요소소득 k 의 집중도를 의미하는 집중계수(concentration coefficient)이다. $S_k G_k R_k$ 는 요소소득 k 가 전체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기여도이다. 즉 총소득에서 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요소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할수록, 총소득이 많을수록, 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요소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된다. 절대적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면 상대적 기여도($S_k G_k R_k / G$)가 된다.

<표 2-3>은 가구 일차소득의 지니계수를 요소소득별로 분해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가구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자영업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었다. 그 각각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 합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하였다.

2013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71이다. 우선 요소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노동소득의 비중은 95.4%이며 자본소득은 4.6%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계정에 비해 자본소득분배율이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중 자체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자본소득의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다. 자본소득의 지니계수는 0.851에 이르러,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높다. 자본소득의 불평등한 분포는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자본소득과 가구소득의 상관관계는 노동소득의 지니상관계수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⁴⁾ 이제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요소소득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보면 노동소득이 94.0%로 압도적이며, 자본소득은 6.0%에 그치고 있다.

Jacobson and Occhino(2012)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감소)분이 자본소득분배율의 감소(증가)분과 동일하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전체

3) $R_k = \frac{cov(y_k, F(y))}{cov(y_k, F(y_k))}$, 이 때 $F(y)$ 와 $F(y_k)$ 는 총소득과 요소소득 k 의 누적분포다.

4) 저소득 분위에서 재산소득/가구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재산소득 비중과 가구소득은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원승연, 2015). 저소득분위에 고령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산소득의 절대액은 작다.

지니계수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분 \times (노동소득 집중계수 - 자본소득 집중계수)만큼 변화시킨다는 산식을 제시한다. 전병유(2014)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변화분을 요소소득 간 집중계수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표 2-3>에서 자본소득의 지니 상관계수는 노동소득에 비해 작지만 자본소득의 불평등도가 노동소득에 비해 훨씬 커서, 자본소득의 집중계수가 노동소득의 그것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중의 증가(노동소득 비중의 하락)는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높인다. 자본소득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12%포인트($= (0.492 - 0.366) / 100$)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한 해의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불평등 수준을 요인분해하는 정태적인 분석이다.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더라도 요소소득의 집중계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한 가정에 기반한다.

첫 번째의 한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분해하는 Karoly and Burtless(1995)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은 두 시점을 선택하여 각 요소소득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는 다음의 식으

<표 2-3> 소득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2013)

	비중 S	지니계수 G	지니 상관계수 R	집중계수 G*R	절대적 기여도 S*G*R	상대적 기여도
근로소득	0.708	0.484	0.709	0.343	0.243	0.654
사업소득	0.258	0.823	0.523	0.430	0.111	0.299
재산소득	0.034	0.930	0.552	0.513	0.017	0.047
노동소득	0.954	0.370	0.987	0.366	0.349	0.940
자본소득	0.046	0.851	0.578	0.492	0.022	0.060
전체	1.000	0.371	1.000	0.371	0.371	1.000

주: 자영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고, 각각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 합하였음.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로 표현할 수 있다.

$$\Delta G = C_1 - C_0 = \sum (S_1 - S_0) G_{k1} R_{k1} + \sum (G_1 - G_0) S_{k1} R_{k1} + \sum (R_1 - R_0) S_{k1} G_{k1} + \epsilon$$

ϵ 은 분해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이다. 우변의 첫째 항은 요소소득 비중의 변화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요소소득의 집중계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요소소득이 불평등할수록, 요소소득이 총 소득분포에서 상위에 집중되어 분포할수록 요소소득 비중의 증가는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한편 선택한 두 시기 가운데 어느 기준연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는 지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두 시기 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Delta C_k = \Delta S_k \overline{C_k} + \Delta C_k \overline{S_k} = \Delta S_k \overline{G_k R_k} + \Delta G_k \overline{S_k R_k} + \Delta R_k \overline{S_k G_k}$$

<표 2-4>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이다. 1996~2013년 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064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표 2-4> 소득불평등 변화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6~2013)

		비중	지니계수	지니 상관계수	집중계수	절대적 기여도
		S	G	R	G*R	S*G*R
1996	노동소득	0.931	0.308	0.961	0.296	0.275
	자본소득	0.069	0.804	0.577	0.464	0.032
	전체	1.000	0.307	1.000	0.307	0.307
2013	노동소득	0.954	0.370	0.987	0.366	0.349
	자본소득	0.046	0.851	0.578	0.492	0.022
	전체	1.000	0.371	1.000	0.371	0.371
1996~2013	노동소득	0.008	0.058	0.008	0.066	0.074
	자본소득	-0.011	0.002	0.000	0.002	-0.009
	전체	-0.003	0.059	0.008	0.067	0.064

주: 자영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고, 각각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 합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는 S_k , G_k , R_k 자체 변화로 인한 각 요소소득의 기여와 요소소득별로 S_k , G_k , R_k 의 변화에 의한 기여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면, 요소소득의 구성비 변화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하락시켰다. 불평등 수준이 낮은 노동소득의 비중 증가가 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노동소득 비중 2.3%포인트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이 0.3%포인트 하락하였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 1%포인트 증가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0.147%포인트 하락시키는 셈이다. 한편 요소소득의 집중계수는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요소소득 자체의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주도하였으며, 요소소득과 가구소득 간 상관관계 증가도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4. 모의실험을 이용한 요인분해

특정 요소소득의 비중이나 전체 소득분포와의 상관관계는 요소소득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소득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Cancian and Reed, 1999). Karoly and Burtless(1995)도 요인 간의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면 원천별 요인분해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두 시기 간 가구소득 불평등이 변화했을 때 다른 요소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요소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이 적용된 모의실험(simulation) 방법을 차용한다. 특정한 요소소득의 분포만이 변하는 가상적인 분포를 만들어서 t+1기 실제 분포의 지니계수와 비교하여, 특정 요소소득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⁵⁾(Burtless, 1999; Cancian and Reed, 1999; Daly and Valletta, 2006; 구인회·임세희, 2007; 김수정, 2014).

모의실험은 다른 요인은 변화하지 않고 특정 요인만이 변화했을 때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가구소득의 원래 분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인만의 변화를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지

5)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요소소득만 변화하였다고 가정하여 t기 실제 분포의 지니계수와 t+1기 실제 분포의 지니계수를 비교할 수도 있다.

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특정 요인이 변화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소득의 분포 변화, 자본소득의 분포 변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 변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순으로 추가하였다. 각 소득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요인의 배열 순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만,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방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은 불변인 상태에서 1996~2013년 간 노동소득의 분포만 변화했을 때의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다. 노동소득의 분포만 변화시키는 것은 1996년의 노동소득에 2013년의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소득 값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각 연도 자료에서 노동소득의 크기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등급별 평균값을 구하여 대입하였다. 분포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2013년의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소득에 (1996년 노동소득 총액/2013년 노동소득 총액)의 비율을 곱하였다.

둘째, 자본소득의 분포 변화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입한다. 누적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서 노동소득 분포를 변화시킨 자료에 자본소득의 분포 변화를 대입한다.

셋째, 각 연도 자료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순위를 각각 구한다. 1996년 노동소득 분포에서 r 순위를 가진 가구가 자본소득 순위 s 를 가진다고 하자. 1996년 자료에 2013년의 상관관계를 대입하기 위하여, 1996년 자료에서 노동소득 r 순위를 가진 가구에 2013년 노동소득 동일 순위를 가지는 자본소득의 순위를 구하고, 그 자본소득 순위에 해당하는 1996년 자료의 자본소득 값을 대입한다. 상관관계는 일대일로 매칭해야 하는데, 2013년 자료의 표본 크기는 1996년 자료에 비해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불가피하게 2013년의 표본 크기만큼 1996년 자료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넷째, 두 시기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각각 구하여, 2013년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하도록 1996년의 노동소득에 (2013년 노동소득분배율/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하고, 자본소득에는 $(1 - 2013년 노동소득분배율)/(1 - 1996년 노동소득분배율)$ 을 곱한다.

- 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하였다.

<표 2-5>에서 2013년의 분포를 대입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요소소득은 1996년과 동일하지만 노동소득만 2013년 수준으로 변하였을 때의 지니계수는 0.36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6~2013년 지니계수 증가폭의 91.7%에 해당하여, 두 시기 간 불평등 증가를 야기한 주도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노동소득 분포의 변화에 자본소득 분포의 변화를 추가하였을 때, 가구소득의 불평등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드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 변화를 추가하였을 때 불평등은 크게 늘어난다. 불평등에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을 보았을 때 자본소득의 불평등도 증가보다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상관관계가 높아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느 기준연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요인만 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별도로 구하였다. 2013년 자료에 1996년의 노동소득 분포를 대입하면, 즉 노동소득의 분포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의 지니계수는 0.311로 나타난다. 실제 지니계수 변화폭에 비해 94.4%를 설명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소득 자체의 불평등보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상관관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 요소소득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

	1996	노동소득의 분포	자본소득의 분포	상관관계	노동소득 분배율	2013
2013년 분포 대입	0.307	0.366 91.7%	0.341 52.2%	0.365 90.9%	0.360 81.6%	0.371 100.0%
	2013	노동소득의 분포	자본소득의 분포	상관관계	노동소득 분배율	1996
1996년 분포 대입	0.371	0.311 94.4%	0.343 44.7%	0.307 100.9%	0.320 80.7%	0.307 1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5. 소득 불평등과 기업소득

이상의 분석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소득 불평등에 이어지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2-6>에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75~96년 동안 순분원소득의 증가율은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이 각각 8.8%, 9.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인 2000~14년에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9.2%로서 가계소득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기업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다.

한편 순조정처분가능소득⁶⁾은 외환위기 이전엔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낮았지만, 외환위기엔 역전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의 증가에 의해 가계로의 현물이전이 증가하였지만, 기업부문의 경상세 감소에 의해 기업부문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 증

<표 2-6>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1975~96	2000~14		
			2000~07	2009~14	
순분원소득	가계	8.8	2.9	3.2	3.6
	기업	9.2	9.2	13.3	6.6
순조정 처분가능소득	가계	8.7	3.1	3.4	3.4
	기업	5.2	14.0	18.9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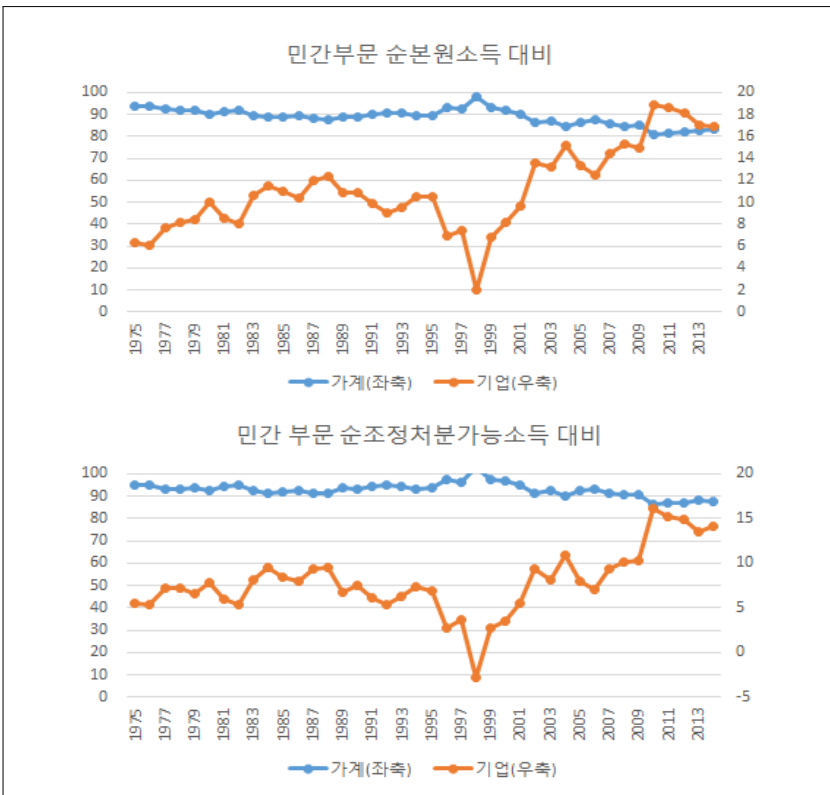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6) 가계나 기업의 분원소득에 정기적으로 소득이나 부에 부과되는 경상세, 순사회부담금(사회부담금-사회수혜금),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와 보험금 등의 기타 경상이전, 교육·의료 등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가감하면 각 경제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조정처분가능소득이 된다.

가율이 14.0%로서, 가계부문의 3.1%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의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증가한다. 민간부문의 순본원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1996년 6.9%에서 2014년 16.8%로 크게 증가하였다.⁷⁾ 민간부문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6년 2.7%에서 2014년 14.2%로 증가

(그림 2-9)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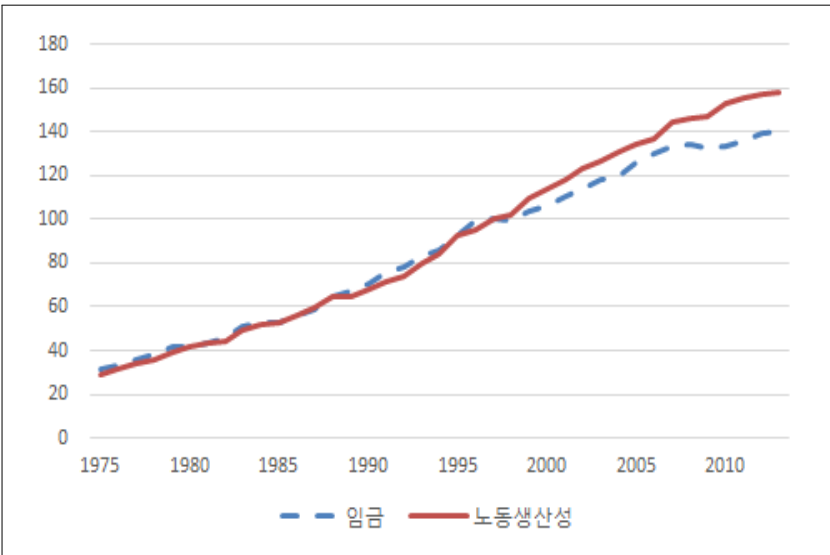
7)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2009~13년 평균 25.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2000년 이후 증가폭도 가장 크다(박원석 의원실,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2015. 10.5).

하였다. 조세 및 준조세요인을 포함해도 기업소득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둔화는 일차적으로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는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임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영업이익은 이자·배당 등의 형태로 자산 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된다. [그림 2-11]을 보면, 민간부분의 순분원소득 대비 기업의 순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2.6%에서 2014년 10.6%로 급증하였다. 사내에 유보된 영업이익, 즉 기업저축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면 가계소득으로 환류될 것이다. 그러나 50대 기업을 분석한 김상조(2015)에 따르면, 가용한 내부 자금에서 실제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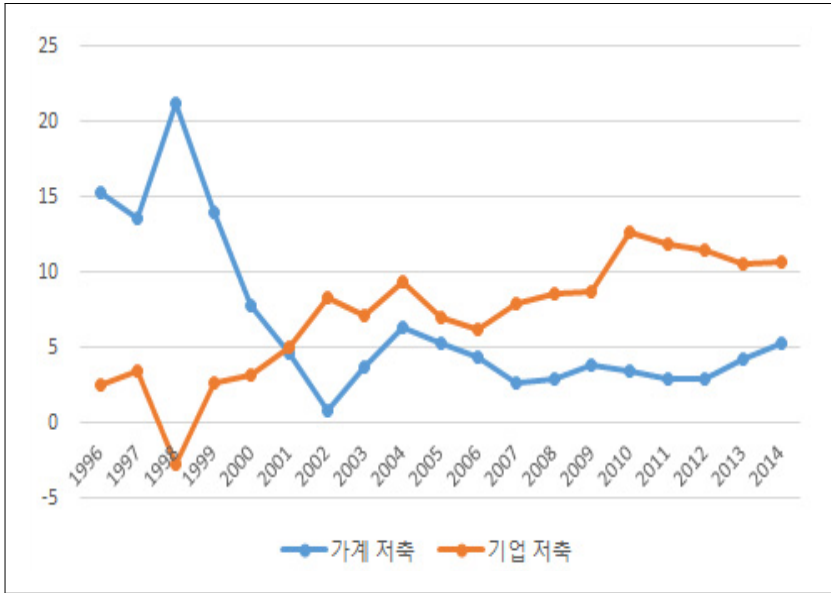
(그림 2-10)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 추이(1997=100)



주: 1인당 임금 = 피용자보수/근로자수.
 노동생산성 = (국내총부가가치 - 개인영업이익)/근로자수.
 각각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값으로 변환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2-11)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기업 저축의 비중

(단위: %)



주: 기업저축은 고정자산소모를 제외한 기업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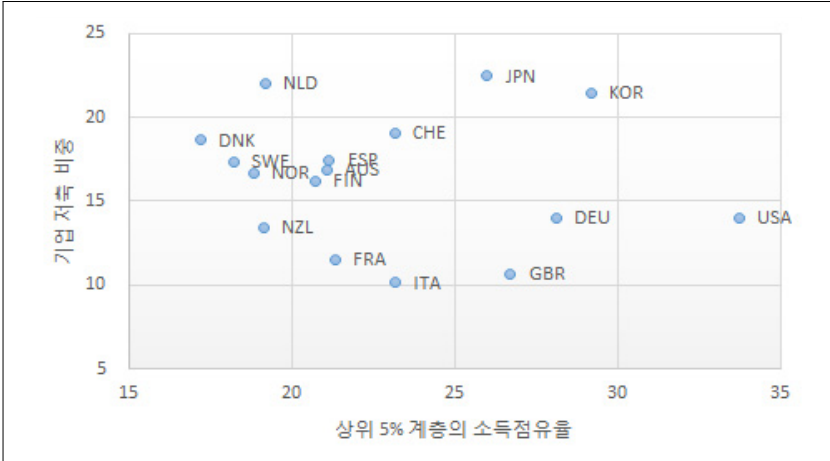
에 투입되는 부분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투자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보되는 기업저축은 장래에 자본소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김영태·박진호, 2012).

[그림 2-12]에는 2010년 상위 5% 계층의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16개국 가운데 상위 5%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며,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다.

8)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투자여력이 큰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박종규(2014)는 유가증권이나 토지 매입 등의 소유권 이전이 기업회계에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국민계정에서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상조(2015)는 flow 개념인 내부자금(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 중 배당을 지급한 후 사내에 유보된 금액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실제 투자지출과 비교하여, 기업에 유보된 내부자금이 투자지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2) 소득 불평등과 기업저축의 비중(2010년)

(단위: %)



주: 기업저축 비중 = 기업저축/총처분가능소득. 2010년 통계가 없는 경우는 가까운 해의 통계임.

자료: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기업소득의 증가는 가구 간, 개인 간 불평등의 증가를 과소하게 측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van Treeck(2015)은 최상위 소득점유율 변화와 기업 순저축 변화 간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순저축 증가는 작은 반면, 독일에서는 기업 이윤과 순저축의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의 변화는 작다. 후자의 경우, 기업의 유보 이윤이 가구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 가구소득이 과소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요소소득의 합인 일차소득에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인척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을 합하면 시장소득이 된

다.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직접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가처분소득이다. 가구의 시장소득에 소득 원천을 하나씩 추가하였을 때의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적 이전과 조세(직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재분배 효과는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와 동일하다.

<표 2-7>을 보면, 공적 이전과 조세의 불평등 감소폭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에는 1.3%였다가 2013년에는 6.2%로 증가하였다.⁹⁾ 구체적으로 보면, 공적 이전에 의한 불평등 개선이 가장 크다. 공공부조,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증가하였다. 다만,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간에는 대체성이 보인다. 직접세에 의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증가하였지만, 시장소득 대비 2.6%에 그친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오히려 불평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5분위로 나누어서, 공적 이전과 조세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공적 이전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직접세의 부담도 증

<표 2-7>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1996			2013		
	지니계수	변화	재분배효과	지니계수	변화	재분배효과
일차소득	0.307			0.371		
+ 사적 이전소득	0.283	-0.024		0.363	-0.008	
+ 공적 이전소득(A)	0.281	-0.003	0.9%	0.348	-0.015	4.2%
+ 직접세(B)	0.279	-0.002	0.6%	0.338	-0.009	2.6%
+ 사회보험료(C)	0.280	0.001	-0.3%	0.340	0.002	-0.6%
재분배(A+B+C)		-0.004	1.3%		-0.023	6.2%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9) 가계동향조사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이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3년 공적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대비 12.9%로 집계되었다.

〈표 2-8〉 가구소득 분위별 공적 이전과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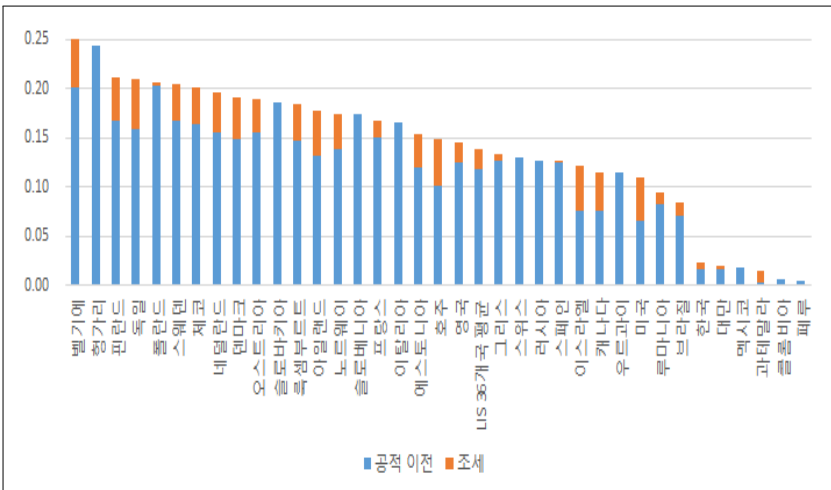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96	공적이전	1.1	0.6	0.6	0.7	0.5
	직접세	-3.5	-2.0	-2.1	-2.3	-2.7
	사회보험료	-2.1	-2.0	-2.0	-1.9	-1.6
2013	공적이전	10.2	3.4	3.3	2.3	1.6
	직접세	-2.3	-2.8	-3.5	-4.6	-6.9
	사회보험료	-7.1	-7.4	-7.4	-7.3	-6.1

주: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가하였지만, 5분위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그쳤다. 사회보험료 부담은 전 가구에서 늘어났는데,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보험료율이라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가 [그림 2-13]에 제시되어 있다. LIS 36개국의

(그림 2-13)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2004년경)



자료: Wang and Caminada(2011).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68,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28이다. 재분배로 인한 지니계수의 하락폭은 0.140으로, 시장소득 대비 3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36개국 가운데 재분배 효과의 절대적 효과는 하위 6위, 상대적 효과는 하위 7위에 머물고 있다.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 글은 기능적 소득분배, 요소소득 불평등,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배 및 재분배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하였다. 자영자의 노동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가계소득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하였다.

둘째,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또는 모의실험을 통한 요인분해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복지의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늘어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머물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 이윤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늘어날수록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이 가구조사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발견에 기초하여 소득분배의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 심화가 소득 불평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노동시장 내부에서 찾아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교환하려는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요소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안정된 수요 기반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의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률 증가와 노동소득을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노동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비용 효율성에 치중한 기업 정책, 금융 정책, 공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요소소득 내부의 분배가 악화되고, 특히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분석결과는 요소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는 노동시장제도와 노동조합이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완화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다(황덕순, 2011). 경제산업정책의 공정성 회복과 공생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의 통합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재분배정책에 회의적인 IMF도 최근 재분배정책이 성장에 기여한다는 실증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생산요소 간의 일차적인 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기업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음을 밝힌다.

제 3 장

근속급과 성과급 : 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제1절 머리말

경제적 불평등의 한 축에는 근로소득, 그 중에서도 임금의 불평등 확대가 있다. 임금 불평등 증감 원인에 대해서는 기술변화, 국제화, 고령화, 고학력화와 같은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제 요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었다(성재민, 2014; 전병유, 2013). 이와 같은 요인들은 임금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도 불평등이 실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테면, Moriguchi & Saez(2008)는 일본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원인으로 기업 내 임금 불평등 억제 역할을 하는 종신고용제(lifetime employment)와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하나의 노조에 조직하는 기업별 단체교섭제도를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종신고용제는 장기 근속한 기업 내부 인물이 경영진이 되게 만들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급제를 임금결정의 근간으로 삼고, 내부 승진한 경영진들이 단일 노조와 교섭하면서 경영진뿐 아니라 생산직·사무직 간에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도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임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별 단체교섭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OECD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임금 결정 시스템의 어떤 점이 불평등 확산을 제어하지 못해 이와 같은 차이를 낳았는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시스템과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어 온 성과급제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라 임금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능력이 좋거나, 일자리 질이 높은 직장에 들어갔을 경우 근속이 길고 임금도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 근속이 길면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근속이 길어짐에 따라 임금이 높게 되는 현상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이들의 능력에 대한 보상 또는 일자리에 잘 매칭(job matching)이 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능력과 일자리 매칭의 질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되는 순수한 근속의 임금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내내 급격한 임금불평등 확대를 경험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3절에서는 성과급제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과급제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면, 성과급제가 확산된 곳에서는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폭이 더 작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근속이 긴 사람들이 능력이 우수하거나, 본인에게 잘 맞는 직장이어서 인정받으며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들이 성과급의 수혜도 함께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에다 성과급에 따른 임금인상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검토해 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이와 같이 확대된 성과급이 임금불평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제5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근속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보통 아래와 같은 식이 추정된다.¹⁰⁾

$$w_{ijt} = \alpha_0 + \beta_0 t + \beta_1 x_{it} + \beta_2 T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1})$$

위 식에서 T 가 근속, t 는 연도터미로 연도에 따른 임금의 경제 전체적인 추세를 통제하는 항목, x_{it} 는 개인 특성. w_{ijt} 는 j 일자리에서 i 의 t 년도 임금을 의미한다.

이 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epsilon_{ijt} = \mu_i + \psi_{ij} + \eta_{ijt} + u_{ijt} \quad (\text{식 2})$$

위 식에서 μ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미관측 특성, ψ_{ij} 는 개인-일자리 매칭(의 질)의 시간 불변 미관측 특성, η_{ij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일자리 매칭과 관련된 미관측 특성, u_{ijt} 는 이들 미관측 특성을 제외하고 남은 측정오차 같은 잔차이다.

여기서 μ_i 는 근속과 양의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해고 가능성이 낮아 근속이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ψ_{ij} 는 일자리 탐색 행위 결과 만들어진, 데이터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자리(매칭)의 질을 표현하게 된다. ψ_{ij} 를 통제한다면 식 1의 β_1 에는 일자리 탐색을 잘해서 만들어진 수익(the return to job shopping)은 제거된, 순수한 일자리 경험연수 증가의 수익만이 반영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험연수, ψ_{ij}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근속에 대한 수익만이 β_2 에 반영되게 된다.

식 3은 일자리 매칭의 질을 경험연수와 근속연수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ψ_{ij} 는 노동시장 경험의 길이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10) 이하에서의 추정 모형 설명은 Altonji & Williams(2005)를 정리한 것이다.

있다. 노동시장 경험이 늘어나면 좋은 일자리를 탐색해내 매칭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 3에서 b_1 은 양일 것이다.

그런데 근속의 계수인 b_2 의 부호는 사전적으로는 모호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좋은 일자리라면 그만둘 가능성이 낮겠지만, 안 좋은 일자리라면 그만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근속과 매칭의 질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즉, b_2 는 + 부호). 그렇지만, 반대로 좋은 일자리 매칭을 위해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지속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사람들은 이직을 한다면, 해당 일자리에서 근속을 더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옮겼을 것이다. 즉 새로운 일자리 j' 에서의 $\psi_{ij'} > \beta_2 T_{ijt} + \psi_{ij}$ 이기 때문에 옮겼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내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된 데 성공한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같은 경험 수준을 가정할 때 좀 더 근속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근속과 매칭의 질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b_2 의 부호는 양(+)일 가능성도, 음(-)일 가능성도 있다.

$$\psi_{ij} = b_1 x_{ijt} + b_2 T_{ijt} + e_{ijt} \quad (\text{식 3})$$

식 2와 식 3은 개인 미관측 특성과 일자리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근속의 계수인 b_2 에 편의(bias)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Altonji & Shakotko(1987)는 이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 변수를 사용하였다.

$$DT_{ijt} = T_{ijt} - \overline{T_{ij}} \quad (\text{식 4})$$

이 도구는 각 개인의 t 기의 근속에서 (j 번째 일자리에서) 각 개인의 근속 평균을 뺀 것이다. 통상 패널 데이터에서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Hausman-Taylor 모형이라면 $DMT_{ijt} = T_{ijt} - \overline{T_{ij}}$ 를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식 4처럼 변형하면 개인의 일자리별 평균값을 빼주게 되므로 개인 특성(μ_i)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자리별 매칭과 관련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ψ_{ij})과도 독립이 된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근속의 순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분석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도구변수 추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간단한 회귀분석으로 먼저 분석해 보았다. <표 3-1>에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월급여 기준으로 아무런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데이터에서 단순 계산해 보면, 근속 1년 증가에 따라 대략 7% 정도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10년이면 약 70% 정도 더 높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바꾸면 대략 근속 10년에 60% 정도 임금이 더 높으며, 성별, 경험연수를 추가하면 근속 10년에 대략 46% 정도 임금이 더 높고, 교육수준을 추가하면 37%, 직업, 사업장 규모까지

<표 3-1>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근속만,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	근속	0.073	0.001	0.000
	근속제곱	-0.001	0.000	0.000
근속만, 종속변수 시간당 임금	근속	0.060	0.001	0.000
	근속제곱	-0.001	0.000	0.000
근속+성별+경험연수 (가)	근속	0.046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가+교육 (나)	근속	0.037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나+직업 (다)	근속	0.034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다+사업장 규모 (라)	근속	0.027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라)에 가중치 부여 (마)	근속	0.028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마+성과급제 도입 여부	근속	0.027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통제하면 근속 10년은 임금을 약 27%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앞서 정리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시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금융위기 전후로 시기를 구분해 2000~05년, 2009~14년을 각각 추정하였다. 실제 추정에서 이용한 모형은 Altonji & Shaktoko(1987)을 따라 근속 첫해의 추정값이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더미 변수 처리(근속첫해= $Fy_{ijt}=1$, 아니면 $Fy_{ijt}=0$)한 아래의 모형이다.

$$w_{ijt} = \alpha_0 + \beta_0 t + \beta_1 x_{it} + \beta_2 T_{ijt} + \beta_3 Fy_{ijt} + \epsilon_{ijt} \quad (\text{식 5})$$

추정치를 이용해 사회 전체적인 임금인상이나 경험연수, 모형에 따라 개인 능력, 일자리 매칭의 질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근속 10년 차에 근속 상승으로 인해 몇 %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지 계산한 결과가 근속 10년에 보고되어 있다.

경험 10년은 사회 전체적인 임금인상이나 근속, 모형에 따라 개인 능력을 통제할 때 순수하게 경험 10년 증가가 임금을 얼마나 인상시키는지의 의미를 의미한다. 연도는 연도를 선형추세로 통제한 것이다. 경험, 근속이 통제된 상황에서 연도에 따른 임금인상은 경기변동이나 최저임금 등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매년의 임금 인상 정도를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OLS로 보면 2000~05년 시기에는 근속 10년이 쌓이면 37.8%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9~14년에는 29.9%의 임금인상 효과가 추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보다는 최근에 임금에 대한 근속의 영향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경험 10년의 임금인상 효과도 2000~05년 13.4%, 2009~14년 9.6%로 역시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은 근속에 비하면 1/3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2000~05년 1년당 약 7.8%, 2009~14년 1년당 약 4.6%여서 최근의 저성장에 따른 낮은 임금인상 효과를 보여 준다.

개인이 체감하는 매년의 임금인상은 근속+경험+사회전체적인 임금인상의 합일 것이다. 이상의 추정치를 볼 때, 전반기 수치 기준 10년이면 복리 제외하고 78% 이상, 후반기 수치 기준 10년이면 46%로 나타난 사회전체

적인 임금인상이 평균적인 개인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근속 > 경험누적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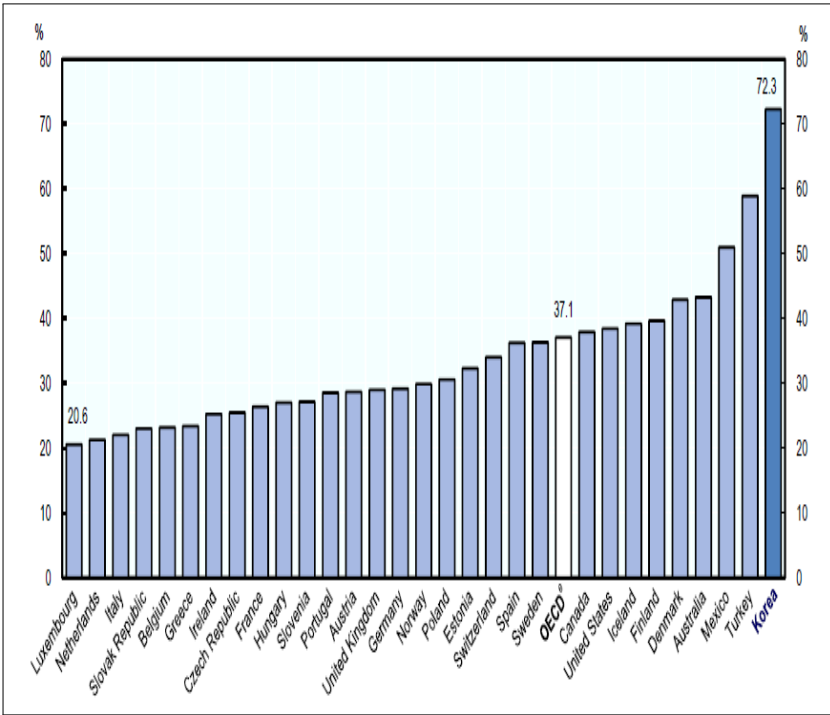
개인 미관측 특성(μ_i)을 도구변수 방법으로 통제하면 근속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보다 2009~14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근속 10년은 2000~05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할 경우 22.4%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지며, 2009~14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할 경우 5.6%의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경험 누적의 영향은 2000~05년에는 도구변수 추정을 해도 별 변화가 없었으나, 2009~14년에는 경험 10년에 16.9% 임금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보면, 개인이 체감하는 임금인상은 2000~05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사회전체적 인상 > 근속누적 > 경험누적 순이지만, 2009~14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사회전체적 인상 > 경험누적 > 근속누적 순으로 변화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개인 미관측 특성뿐 아니라 일자리 매칭의 질(ψ_{ij})도 통제된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았다. 결과를 보면 OLS에 비해서는 근속 10년 누적 효과가 감소했지만, 개인 능력(μ_i)만 통제했을 때에 비해서는 계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10년 누적의 효과는 2000~05년 간 자료를 이용할 경우 31.9% 인상, 2009~14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12.3%로, 두 수치 모두 개인 미관측 특성만 통제했을 때보다 증가한 것이다.

앞서 식 (3)에 대한 설명에서 근속연수는 일자리 매칭의 질과 양(+)의 관계도, 음(-)의 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일자리 매칭의 질이 높으면 오래 머물고 싶고, 해고 가능성도 낮아 근속연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일자리 탐색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는 것이 일자리 매칭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더 일반적이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칭의 질이 높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은 경험이 같다면 근속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 미관측 특성만 통제한 경우보다 회귀계수가 커진다는 정도의 의미이므로, 능력수준이 같다면, 근속이 짧은 사람 중 상당수는 좋은 매칭을 드디어 달성해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림 3-1〕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이직률



자료 : Goglio, Alessandro and Paul Swaim(2013), “Policies to Tackle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KDI-OECD Joint Conference on Korea’s Social Policies, Seoul, 5 February 2013.

우리나라 입이직률은 OECD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정규직이 많고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이 존재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도 작용하겠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자발적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매칭을 만들어 내려는, 바로 위의 추정치가 보여주는 결과를 반영한 것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경험변수에도 미관측 특성을 통제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면, 근속의 추정치는 크게 감소하지만 경험의 추정치는 기이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험의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경험누적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2> 도구변수 추정결과

	OLS			IV-개인미관측특성			IV-개인미관측+미관측 일자리 매치 이질성			IV-경험변수도 개인 미관측 통제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3~8차년도												
근속	0.0374	0.0018	0.0000	0.0158	0.0044	0.0000	0.0182	0.0056	0.0010	0.0082	0.0060	0.1680
근속 제공	-0.0004	0.0001	0.0000	0.0006	0.0002	0.0010	0.0011	0.0002	0.0000	0.0013	0.0002	0.0000
근속 철회	0.0417	0.0092	0.0000	0.0033	0.0123	0.7860	0.0279	0.0146	0.0560	0.0252	0.0153	0.0990
연도	0.0778	0.0019	0.0000	0.0799	0.0020	0.0000	0.0798	0.0020	0.0000	0.0793	0.0026	0.0000
경험	0.0175	0.0012	0.0000	0.0182	0.0016	0.0000	0.0113	0.0020	0.0000	0.0649	0.0103	0.0000
경험 제공	-0.0004	0.0000	0.0000	-0.0004	0.0000	0.0000	-0.0004	0.0000	0.0000	-0.0013	0.0002	0.0000
근속 10년	0.378			0.224			0.319			0.241		
경험 10년	0.134			0.138			0.077			0.516		
12~17차년도												
근속	0.0305	0.0020	0.0000	0.0052	0.0031	0.0910	0.0090	0.0028	0.0010	0.0014	0.0032	0.6540
근속 제공	-0.0002	0.0001	0.0040	0.0002	0.0001	0.0400	0.0001	0.0001	0.1450	0.0000	0.0001	0.7170
근속 철회	0.0144	0.0085	0.0900	-0.0211	0.0096	0.0280	0.0181	0.0066	0.0060	0.0130	0.0068	0.0580
연도	0.0456	0.0014	0.0000	0.0464	0.0015	0.0000	0.0462	0.0015	0.0000	0.0307	0.0040	0.0000
경험	0.0131	0.0015	0.0000	0.0216	0.0018	0.0000	0.0202	0.0018	0.0000	0.0627	0.0146	0.0000
경험 제공	-0.0004	0.0000	0.0000	-0.0005	0.0000	0.0000	-0.0005	0.0000	0.0000	-0.0007	0.0002	0.0000
근속 10년	0.299			0.056			0.123			0.031		
경험 10년	0.096			0.169			0.157			0.55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이상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연도별 임금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저임금,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임금인상이며, 근속의 영향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경험 누적과 비슷하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3>에서는 유사한 분석방법을 이용해 추정된 외국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수준이 높긴 하지만, 개인 능력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할 경우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크지만 미국 1975~2001년 기준으로 추정된 11.2%와 유사한

〈표 3-3〉 도구변수 추정결과의 국가별 비교

	영국	독일	미국	한국
10년 근속 - OLS	8.8%	12.8%	20.4%	29.9%
10년 근속 - 개인 미관측 특성	8.6%	4.8%		5.6%
10년 근속 - 개인 미관측 특성+일자리 미관측 특성	5.4%	-0.03%	4.0%, 1975~2001년 기준 11.2%	12.3%

자료: 독일과 영국은 Dustmann & Pereira(2008), 미국은 Altonji & Williams(2005)의 추정 결과를 인용한 것임.

값을 보여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는 개인 미관측 특성에 더해 일자리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경우 추정치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활발한 자발적 이직과, 이를 통한 직업탐색이 더 성공적인 매칭으로 이어지는 한국적인 경력 발전과정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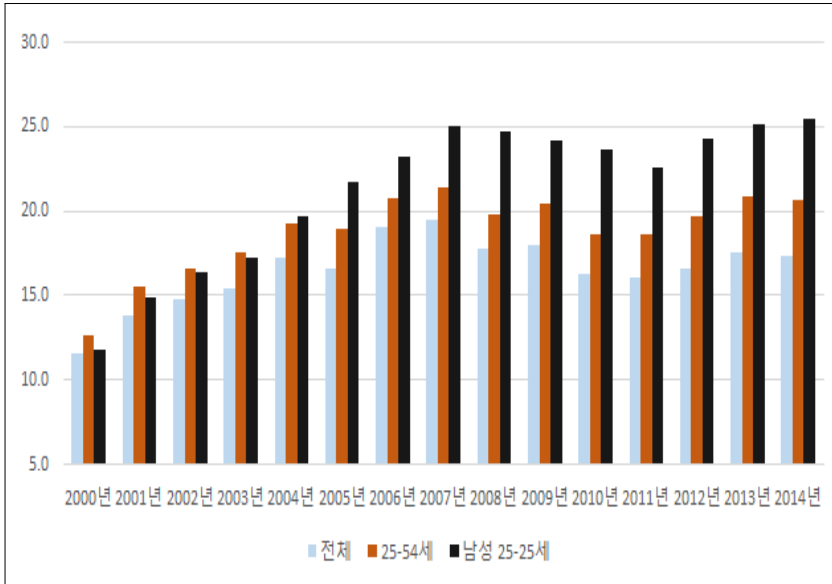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1.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가 포함된 임금 결정방식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을 한국노동패널조사로 확인해 보면, 2000년 전체 근로자 기준 11.5%에서 시작해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9.5%까지 확대된 이후 다소 떨어져 17%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와 은퇴연령대를 제외하고 25~54세에 국한해 볼 경우 성과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지만 추이 자체는 비슷하다. 남성 25~54세로 국한해 보면 대략 1/4 정도의 근로자가 성과급제를 현재 적용받고

(그림 3-2) 전체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제 적용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서열별로 10개의 분위를 나누어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2000년에만 해도 가장 높은 10분위 18.7%, 가장 낮은 1분위 8.2% 등 임금이 높은 쪽에 비해 낮은 쪽의 성과급 적용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분위에서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7년 뒤에는 임금이 낮은 계층에서는 별다른 성과급제 확대가 보이지 않지만, 대략 7분위부터는 임금이 높을수록 성과급제가 크게 확대되어 가장 높은 10분위는 절반에 가까운 49.6%가 성과급제에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성과급제와 노조 유무를 교차해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노조가 있는 곳의 평균 근속기간이 노조가 없는 곳에 비해 두 배가량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을 노조 유무별로 보면, 노조가 없을 경우 성과급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곳에 비해 약간 긴 근속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2000년에는 없었다. 2000

〈표 3-4〉 임금분위별 성과급제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단위: %)

	2000	2007	2014
1분위	8.2	5.7	2.8
2분위	7.9	5.2	5.3
3분위	6.6	7.1	7.3
4분위	9.7	10.9	8.5
5분위	11.1	13.9	13.5
6분위	13.8	12.2	11.5
7분위	12.5	22.7	18.6
8분위	14.7	24.6	24.0
9분위	11.7	43.8	39.9
10분위	18.7	49.6	45.7
전 체	11.5	19.5	17.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5〉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근속기간

(단위: 년)

		3차(2000년)		17차(2014년)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전 체	무노조	3.6	3.3	5.1	7.7
	유노조	7.8	6.7	11.3	13.1
남성, 25~54세	무노조	4.7	3.2	6.1	7.8
	유노조	8.7	7.6	12.6	12.6
여성, 25~54세	무노조	2.8	2.7	4.3	6.2
	유노조	7.7	5.4	7.5	13.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년에만 해도 유노조 무성과급기업의 근속기간이 유노조 유성과급기업의 근속기간보다 소폭 길었지만, 2014년이 되면 남성은 차이 없고, 여성은 오히려 유노조 유성과급기업의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노조가 없는 곳에 비해서는 대체로 노조가 있는 곳의 시간당 임금이 높은 가운데, 노조 유무별로 보면 성과급제가 있는 쪽의 임금이 없는 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제가

〈표 3-6〉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 만 원)

		3차(2000년)		17차(2014년)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전 체	무노조	0.47	0.58	1.05	1.66
	유노조	0.68	0.68	1.75	2.04
남성, 25~54세	무노조	0.58	0.68	1.28	1.78
	유노조	0.71	0.75	2.02	2.22
여성, 25~54세	무노조	0.37	0.50	0.93	1.39
	유노조	0.61	0.65	1.34	1.7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있고, 노조가 있는 경우 고임금 쪽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성과급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경우 중간-중간 상위 정도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성과급은 성과(생산성)에 맞춰 보상하므로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업의 종업원 감독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더 잘 반영하므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선별효과(sorting effect)를 기업에게 제공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¹¹⁾

또한 장기고용관계에서는 승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통해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원래부터 당장의 많은 보상을 원하는 특성이 있는 근로자 집단을 고용하는 경우 당장 더 보상해 주는 성과급 제도가 효용이 높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들은 성과급을 도입할 유인이 있는 한편으로, 성과급은 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 선별효과 때문이든, 아니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기 때문이든, 일부 집단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상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양극화 시대에 고속련자의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큰 트렌드 변화에서 성과급제는 과실을 더 원활히 상향 이동시키는 전달벨트 역

11) 이하의 성과급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Lemieux et al.(2009)을 정리한 것이다.

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과급이 실제 불평등 수준을 높이는지는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성과급이 도입되기 전 임금체계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임금분포의 하위에 위치한다면 성과급의 확산이 상위임금불평등 확대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상위 임금 계층이 기존에도 향유하고 있던 렌트(rent) 추구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수단으로 성과급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상위계층에서 성과급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이상의 논리에 따르면, 성과급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추정식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 가능하게 된다.

우선, 성과급제하에서는 감독비용이 낮기 때문에, 성과급제에서와 비성과급제에서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면, 성과급제에서 상수항이 더 작게 된다.

둘째, 성과급제를 하면 능력이 임금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종 숙련지표나 미관측 개인특성에 따른 보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제를 하면 일자리 특성에 따른 보상은 낮아질 것이다.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자리에 있는지에는 덜 연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시스템은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은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에서만 이용 가능한 숙련에 대한 보상이나 장기 고용관계를 지속하면서 장기적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임금 체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특성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급제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장기 근속이 일부 집단에 한정되는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에선 근속 배분에 따른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는 대신 성과급에 따른 불평등은 강화되는, 일종의 근속급과 성과급이 대체되는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숙련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시켜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보상 또한 크게 만드는 성과급의 특성상 기업특수숙련에 대한 보상 측면도 있는 근속에 따른 보상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속으로 보상하고 성과급까지 없어지는 보완관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Lemieux et al.(2009)은 성과급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begin{aligned} \text{로그임금} = & \beta_1 \text{성과급유무} + \beta_2 \text{인적특성} & (\text{식 6}) \\ & + \beta_3 \text{인적특성} \times \text{성과급 유무} + \beta_4 \text{사업체 특성} \\ & + \beta_5 \text{사업체특성} \times \text{성과급 유무} \end{aligned}$$

앞서의 정리에 따르면, 식 6의 β_1 은 낮은 감독비용 때문에 음수(-)로 추정되어야 하며, 성과급제하에서 교육수준, 노동시장 경험 같은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보상받게 되므로 β_3 는 양(+)의 값으로 추정될 것이다. 근속을 포함해 사업체 특성은 성과 보상의 특성상 일자리 특성보다는 개인의 성과가 더 중요하므로 β_5 는 음(-)의 값으로 추정될 것이다.

실제 Lemieux et al.(2009)의 추정에 따르면, 근속의 β_5 는 (-)으로 추정되었으며, β_3 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결과는 노동패널조사 10~17차 조사자료를 이용해 추정되었으며, <표 3-7>에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선형회귀모형에서는 성과급의 회귀계수가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추정되었다. 여성은 성과급제하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7% 높은 임금을 받으며, 교육×성과급 계수가 모두 (+)여서 예상대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노동시장 경험의 대리변수로 본다면, 역시 성과급 교호항의 계수가 (+)여서 고숙련, 고학력 등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된 보상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성과급이 있으면, 성과급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에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직업, 업종도 성과급 교호항이 보상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해 일자리 특성에 따른 보상은 성과급제하에서 작아진다는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근속의 경우는 예상과 다르게 성과급제하에서 오히려 보상 수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해 보면 근속 10년이라면 성과급제가 없을 경우 20% 정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성과급제가 있을 경우 26%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가 근속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 보상을 강화하는 방

〈표 3-7〉 성과급제의 효과

	OLS			고정효과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성과급	-0.156	0.138	0.257	0.049	0.133	0.715
여성	-0.295	0.005	0.000			
여성×성과급	0.070	0.013	0.000	-0.017	0.014	0.216
교육(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42	0.010	0.000	0.006	0.064	0.929
고졸	0.157	0.009	0.000	0.058	0.084	0.492
전문대졸	0.271	0.011	0.000	0.125	0.098	0.199
대졸	0.353	0.012	0.000	0.265	0.100	0.008
대학원 이상	0.488	0.017	0.000	0.160	0.107	0.134
교육×성과급						
중졸 이하	0.012	0.047	0.793	0.150	0.045	0.001
고졸	0.173	0.042	0.000	0.074	0.041	0.070
전문대졸	0.110	0.044	0.013	0.091	0.043	0.036
대졸	0.160	0.044	0.000	0.087	0.043	0.044
대학원 이상	0.104	0.049	0.033	0.062	0.048	0.198
연령	0.043	0.001	0.000	0.109	0.003	0.000
연령제급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연령×성과급	0.003	0.005	0.533	-0.010	0.004	0.029
연령제급×성과급	0.000	0.000	0.620	0.000	0.000	0.014
근속연수	0.023	0.001	0.000	0.010	0.001	0.000
근속연수 제급	0.000	0.000	0.000	0.000	0.000	0.024
근속연수×성과급	0.006	0.002	0.008	-0.001	0.002	0.654
근속연수 제급×성과급	0.000	0.000	0.477	0.000	0.000	0.313
노조유무	0.097	0.008	0.000	0.018	0.008	0.017
노조유무×성과급	-0.053	0.014	0.000	-0.034	0.012	0.005
근속 10년						
성과급제 있음	0.263			0.088		
성과급제 없음	0.207			0.090		

주: 보고된 변수 외에도 산업과 직업을 대분류 수준에서 통제하였으며, 사업체 rabh도 통제하였음. 이들 변수 모두 성과급과 교호항으로도 통제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결과(고정효과 모형)를 보면, 성과급 교호항은 대졸이 (+)로 유의하며, 노조 유무가 (-)로 유의할 뿐 대부분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근속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성과급 확산이 임금불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았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임금불평등은 약 2007년 정도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 절에서 분석에 이용한 기법은 성과급 확산이 불평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성과급 적용 비율이 예전과 같을 때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할까를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다. DiNardo, Fortin, & Lemieux(1996)은 노동조합원 여부 변수를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노동조합원 비율이 같을 때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의 인적 특성, 산업 등 일자리 특성까지 유사하게 일치시킨 상태에서 불평등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조합원 여부가 아니라 성과급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2000년에 성과급제를 적용받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및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2014년 자료에서 일치시킬 경우 2014년의 불평등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였다.

앞서 본 불평등의 정점은 2007년이므로, 2000년의 성과급제 비율, 성과급/비성과급 근로자들의 특성까지 2007년에 적용시킬 때 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0년과 2014년의 실제 불평등은 9분위 대 5분위의 경우 0.73에서 0.84 로그 포인트 차이로 증가하

〈표 3-8〉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9대5 격차	5대1 격차	9대1 격차
2000	0.73	0.68	1.40
2001	0.79	0.69	1.48
2002	0.81	0.69	1.50
2003	0.84	0.74	1.58
2004	0.88	0.78	1.67
2005	0.88	0.79	1.67
2006	0.88	0.78	1.66
2007	0.91	0.75	1.66
2008	0.86	0.77	1.63
2009	0.86	0.71	1.57
2010	0.83	0.75	1.58
2011	0.85	0.74	1.59
2012	0.82	0.69	1.51
2013	0.83	0.69	1.52
2014	0.84	0.67	1.5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였다. 2014년 임금수준에 2000년의 성과급제 비중, 성과급제 받는 사람들의 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비성과급제 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을 적용하면 9대5 격차는 0.82로 감소하여 성과급제 확산으로는 이 시기 불평등 증가의 단지 17.9%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있다는 것은 0~100 사이의 값일 때 그런 것이고, 이 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설명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9분위 대 5분위 격차는 약 20% 정도 설명하며, 5분위 대 1분위 격차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은 중간 계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상위 75%에 해당하는 7.5분위와 5분위의 임금격차도 분석해 보았는데, 이 층의 임금불평등 증가의 57%를 성과급제 확산이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서는 같은 기법으로 Lemieux et al.(2009)이 분석한 결과 1970~90년대 간 임금불평등 성장의 20% 정도는 성과급 확산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최상층부(8분위 위, 즉 상위 20%의 불평등 증가)의 임금불평등 성장은 전적으로 성과급 확산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20% 이내의 불평등 증가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표에 보고된 것처럼 중상위, 즉 상위 5~7.5분위의 임금불평등 증가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상위층 불평등 증대에서 성과급제 확산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사이 최상위 10분위 임금계층에서는 성과급제의 적용범위가 1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비성과급제에 있던 근로자들이 성과급제로 이동해 성과급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임금불평등 수준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 점, 그리고 성과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층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3-9〉 임금불평등에 대한 성과급제 확산의 효과

	9분위 대 5분위	5분위 대 1분위	9분위 대 1분위
2000년 실제	0.73	0.68	1.40
2014년 실제	0.84	0.67	1.50
2000년 분포~2014년 임금	0.82	0.68	1.50
설명력	17.9	179.1	2.7
	9분위 대 5분위	5분위 대 1분위	9분위 대 1분위
2000년 실제	0.73	0.68	1.40
2007년 실제	0.91	0.75	1.66
2000년 분포~2014년 임금	0.88	0.77	1.64
설명력	20.2	-20.6	8.3
	7.5분위 대 5분위	5분위 대 1분위	7.5분위 대 1분위
2000년 실제	0.38	0.68	1.06
2007년 실제	0.47	0.75	1.22
2000년 분포~2014년 임금	0.42	0.77	1.19
설명력	57.1	-20.6	21.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 이에 따른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고 본 근속의 순수한 임금에 대한 영향은 10년 근속당 5~10% 임금인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 자료 상 관찰된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의 약 1/4~1/3 수준으로, 나머지 3/4 내지 2/3는 (관찰되지 않는) 능력이나 일자리 특성의 결과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추정된 순수한 근속의 효과는 비슷한 방법을 활용한 미국의 연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2000년대에는 성과급이 많이 확산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완화시켰는지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실제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차피 많이 받았을 사람들에게 성과보상까지 추가하는, 근속급을 보완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인해 중상위 임금불평등 강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최상위층에서 나타난 불평등 확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90%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성과급제 확산이 대략 2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 불평등 증대에서 성과급제 확산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최상위 10분위 임금계층 성과급제 적용범위가 2000년 10% 수준에서 2007년 5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비성과급제에 있던 근로자들이 성과급

제로 이동해 성과급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임금불평등 수준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고, 또한 성과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층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속급의 (직무)성과급제로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나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근속은 이미 그 자체로 개인의 능력이나 해당 일자리와 개인의 궁합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을 제외할 경우 구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임금에 대한 순수효과를 보인다. 모두가 비슷하게 근속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로 개인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 일본식 근속급과 달리,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은 일본과는 외형만 유사할 뿐 능력 있는 개인에게 보상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더 가깝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근속이 긴 사람은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속급을 약화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 더 많은 사람들의 근속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생애임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근속급에 성과급이 얹혀져 일부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형태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한다. 직무성과급이라는 좋은 의도와 실제 나타난 결과의 상충을 시사하는 것이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변화는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불평등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양극화의 반복일 것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서구선진산업국가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입이직이 대단히 활발하고 입이직의 상당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발적 이직이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관측) 개인특성이 같다면 일자리 매치의 질이 좋은 사람은 자발적 입이직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근속이 짧은 사람들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의 발견은 근속이 짧은 또 다른 이유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직무)성과급제가 확산되는 것처럼 오직 개별 기업단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불평등이나 개인의 발전경로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 임금 결정의 좀 더 초기업적 대안을 생각해 볼 때 이다.

제 4 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제1절 머리말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자산분포 혹은 자산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가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부족해서이다. 관련 기존 연구는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정우·이성립(2002)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가구자산 분포를 연구하였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토지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전세제도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최하층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는 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결합분포를 연구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정보가 있는 2003년 부동산 과세자료와 소득정보가 담긴 200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소득-부동산 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보았다. 부동산 과세자료는 행정자료로 조사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분포를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인데, 이를 고소득과 고자산 가구가 잘 포착되지 않

는 가계조사자료에 붙이면서 자산소유형태의 전모를 알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전병유·정준호(2014)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산과 소득의 관련성을 외국과 비교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표본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를 많이 포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자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저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비슷해서 상관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발표된 국민계정의 대차대조표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자산-소득 비율을 살펴본다. 그리고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가계금융조사’가 그나마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조사이기는 하지만, 자산이 매우 많은 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자산 불평등의 전모를 알 수 없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산분포의 온전한 형태를 알기 전에, 본 연구의 제4절에서는 현재 가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재산소득의 분포와 금액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현재 조사되거나 포착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향후 보다 온전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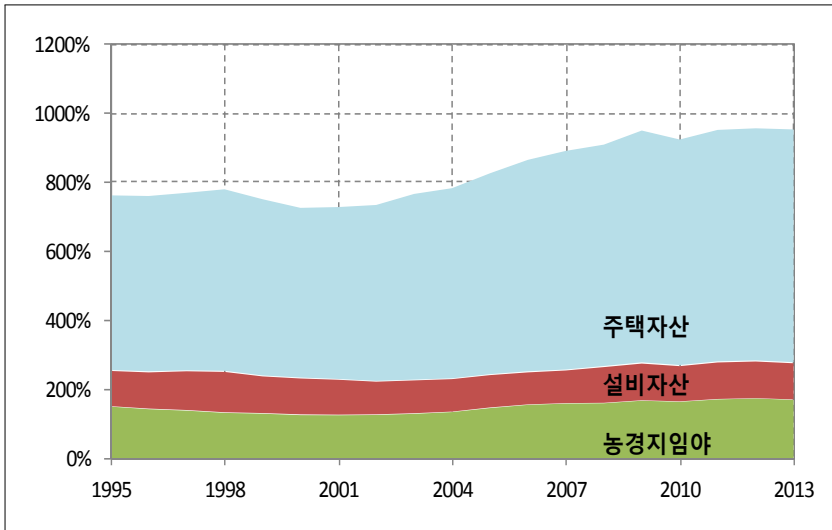
제2절 자산통계 현황

1. 국민계정의 자산통계

가. 국가자산(정부자산 포함)

최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어 거시적인 지표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은 크게

(그림 4-1) 국가총자산/국민총소득 비율



자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주택자산, 설비자산, 농경지임야로 나뉜다. 주택자산은 건설자산(주거용 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과 토지자산(주거용부속토지, 비주거용부속토지, 구축물부속토지)을 합한 것이다. 설비자산은 생산에 필요한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을 합한 것이다. 농경지임야에는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 임목자산이 있다.

[그림 4-1]에서는 국가총자산을 국민순소득(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을 보여주고 있다. 총자산/국민소득 비율은 2001년 726%에서 2013년 955%로 증가하였다. 소득대비 자산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택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택자산/국민소득 비율은 2000년 약 495%에서 2013년 678%로 증가하였다. 국민소득 대비 설비자산과 농경지임야 등 다른 자산의 비율은 100%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다.

나. 개인자산

개인자산은 총자산에서 정부나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개인자산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자료에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인자산에 대한 정보는 2011년부터 있고,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개인자산에 대한 정보는 1995년부터 있다.

먼저 <표 4-1>에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개인소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국민계정에서 개인부문 순본원소득잔액을 가리킨다.¹²⁾

순자산/개인소득 비중은 약 770% 정도이다. 개인자산 가운데 주택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개인자산 중 주택자산이 56%를 차지하여 주택자산/개인소득 비중은 약 430%이다. 금융순자산은 순자산의 22%를 차지한다.¹³⁾

[그림 4-2]에서는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 대비 개인자산의 비율을 보여준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개인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430%에서 2010년대 600%로 증가하였다. 소득대비 자산비율이 늘어난 것은 주거용 건물과 토지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소득 대비 비주거용건물, 농경지, 설비재고자산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이상에서 국가자산/국민총소득 비율과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표 4-1>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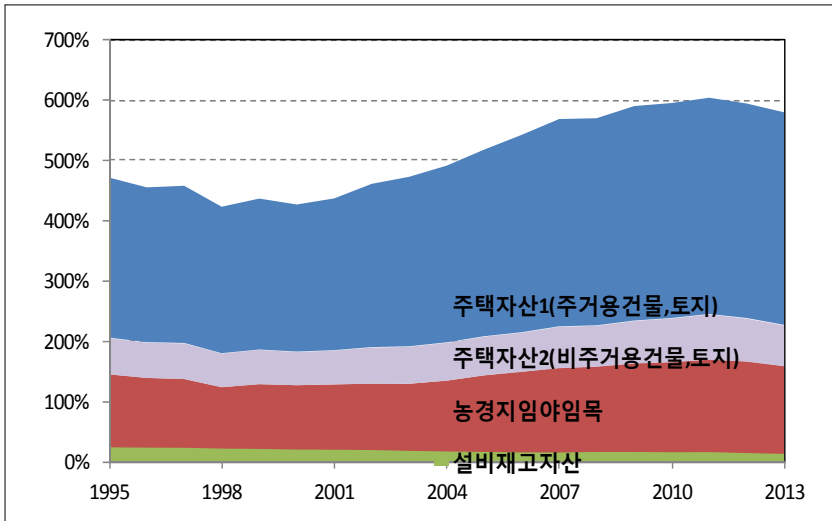
	2011	2012	2013
주택자산	4.41	4.34	4.27
금융순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1.63	1.69	1.74
기타자산	0.17	0.15	0.14
순자산	7.73	7.71	7.60

자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2) 순본원소득잔액에는 귀속소득이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개인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은 더 높다.

13) 참고로, Piketty and Zucman(2014)이 개인자산을 계산할 때에는 소비자 내구재 가치를 제한다. 한국에서는 '국가자산통계'에서 소비자 내구재의 가치는 2012년 약 227조 원이다. 소비자 내구재의 가치가 개인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소비자 내구재를 빼지 않아도 자산/소득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4-2]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자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아파트 공급의 증가)이 주택자산 상승을 주도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의 상승은 불평등에서 자산의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나 설비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평등 분포와 전개에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논의한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자산 현황

여기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 현황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얼마나 자산을 포착하고 있는지 비교한 것이 <표 4-2>이다.

국민계정에 발표된 2013년 총자산은 7,585조 원인 데 반해 가계금융조사에 발표된 총자산은 5,906조 원으로 국민계정 대비 77.9%에 해당한다. 자산의 구성항목별로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실물자산,

〈표 4-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민계정 개인자산의 비교

(단위: 십억 원)

	가계금융복지조사 (A)	국민계정 (B)	비율 (A)/(B)
총자산	5,906,222	7,585,524	0.779
금융자산	1,578,372	2,673,989	0.590
실물자산	4,327,850	4,911,535	0.881
순자산	4,850,691	6,365,889	0.762
부채총액	1,055,531	1,219,635	0.865

자료: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국민계정 개인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채는 약 87% 전후이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국민계정 대비 59%가 포착되고 있다. 조사자료가 초고자산 보유 집단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 자산에 비해 금융자산의 소유가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조사자료의 과소포착 문제가 금융자산에 대해 더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우 거칠게 얘기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체 자산의 20% 정도를 보유한 초고자산 집단은 포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여기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소득분포를 분석한다. <표 4-3>에서는 2013년 현재 가구총자산 분위별 자산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자산이 가장 적은 가구가 1분위이고 가장 많은 가구가 10분위에 있다.

이 자료에서는 최상위 10% 가구가 전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나타난다. 국세통계 자료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7%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집중도가 소득의 집중도보다 매우 큰 것을 감안하면 최상위 10%의 자산비중 44.5%는 매우 적은 값이다.

[그림 4-3]에서는 총자산 분위별로 각 자산항목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구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67.1%를 차지한다. 앞서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에서는 개인자산 중 주택자산이 5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조사자료에서 부동산 자산에 비해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과소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자료에서는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과대평가된다.

〈표 4-3〉 분위별 가구 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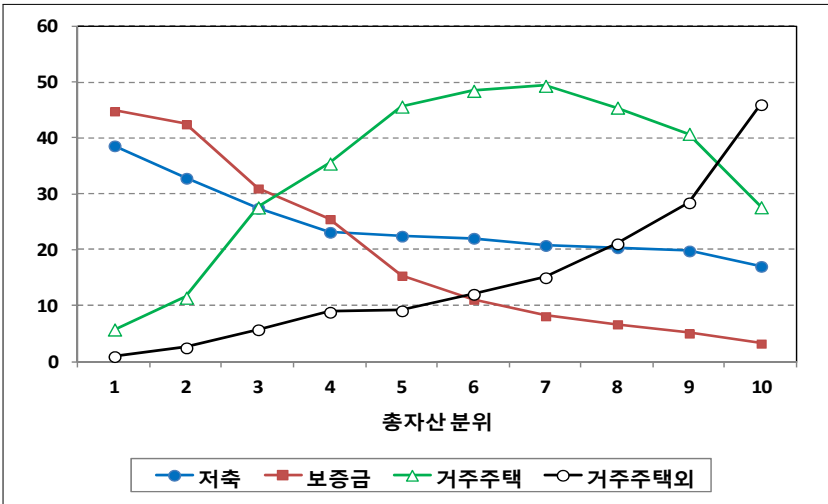
(단위: 만 원)

분위	가구 총자산 평균	총자산 집중도 (%)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	보증금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계약금	기타 실물
1분위	607	0.2	235	272	35	6	0	59
2분위	2,950	0.9	969	1,255	339	74	2	311
3분위	6,476	2.0	1,780	2,009	1,790	372	20	505
4분위	10,684	3.3	2,478	2,728	3,792	949	34	704
5분위	15,440	4.8	3,474	2,382	7,055	1,410	64	1,055
6분위	21,273	6.4	4,706	2,365	10,319	2,573	81	1,228
7분위	28,805	8.7	6,001	2,353	14,231	4,337	207	1,676
8분위	38,999	11.2	7,968	2,618	17,743	8,235	351	2,083
9분위	57,187	16.6	11,353	2,913	23,340	16,278	481	2,823
10분위	143,185	44.5	24,475	4,682	39,625	65,904	975	7,524
Total	32,557	100.0	6,343	2,357	11,826	10,013	222	1,796
Gini	0.596		0.675	0.852	0.690	0.873	0.989	0.767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3) 가구총자산 분위별 각 자산항목의 비중

(단위: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러한 조사자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가구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금융자산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택거주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자산(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계약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5%이다.

총자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은 51.6%이며 4분위(70.2%)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4분위를 넘어서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며 자산이 가장 높은 10분위에서는 77.7%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등이 있는데, 총자산 가운데 어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가에 따라 가구를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그룹은 가구 총자산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로 1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2그룹은 총자산 가운데 거주주택 자산이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로 4분위부터 9분위까지의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3그룹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로 10분위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총자산 가운데 거주외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873으로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 반면 저축, 거주주택의 지니계수는 각각 0.675, 0.690으로 다른 자산항목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은 편이다. 주택자산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는 이중적이어서, 자가주택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거주주택 외의 주택소유는 자산불평등을 확대한다.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외 주택, 계약금을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자산의 지니계수는 0.630으로 저축의 지니계수보다 약간 낮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자산은 전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표 4-4>에서는 총자산 분위별로 부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자산이 많을수록 총부채액도 많다.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 가구의 총부채액은 256백만 원으로 9분위 가구 부채액의 2.5배에 달한다.

〈표 4-4〉 자산분위별 부채 현황

(단위: 만 원)

	총자산 (A)	금융 부채 (B)	임대 보증금 (C)	총부채 (D)=(B)+ (C)	금융부채 /총부채 (B)/(D)	금융부채 /총자산 (B)/(A)	금융부채 /총소득
1분위	607	680	0	680	1.000	1.120	0.491
2분위	2,950	764	1	765	0.999	0.259	0.347
3분위	6,476	1,048	34	1,083	0.968	0.162	0.403
4분위	10,684	1,680	101	1,781	0.943	0.157	0.530
5분위	15,440	2,431	206	2,637	0.922	0.157	0.654
6분위	21,273	2,998	517	3,516	0.853	0.141	0.683
7분위	28,805	3,850	894	4,744	0.812	0.134	0.771
8분위	38,999	5,087	1,867	6,954	0.732	0.130	0.890
9분위	57,187	6,477	3,932	10,409	0.622	0.113	0.975
10분위	143,185	14,656	10,966	25,622	0.572	0.102	1.476
Total	32,557	3,967	1,852	5,818	0.682	0.122	0.88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둘째, 총자산이 많을수록(총부채액이 많을수록)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의 비중은 하락하고 임대보증금의 비중은 상승한다. 자산이 적은 가구에 는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은 금융부채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아주 자산이 많은 경우(예: 10분위) 주거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많다. 임대보증금은 부채항목이므로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셋째,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서 금융부채/총자산 비율이 낮다. 금융부채/총자산 비율은 3~8분위 가구의 경우 14% 내외인 반면, 10분위 가구에서는 10.2%이다. 따라서 총자산이 많은 가구가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부채의 부담이 적다. 반면 금융부채의 부담이 큰 집단은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로 금융부채액이 자산액보다 더 크다.

넷째, 가계의 부채부담을 재는 척도로 부채/소득 비율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부채/총소득 비율이 높다. 이 척도를 사용하면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부담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는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도 많고 임대보증금도 많다. 총자산이 매우 많은 가구들이 보유한 부채는 임대수입이나 부동산 매매차익을 기대하여 생긴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투자형 부채이다. 금융부채/소득 비율은 자산이 아주 높은 사람들의 부채를 과대평가하고, 한편으로 자산이 아주 적은 가구의 생활형 부채 부담은 과소평가한다.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에 주택과 토지자산 정보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는데, 주택자산 보유는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토지보유는 소득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전병유·정준호(2014)의 연구에서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산 불평등과 자산-소득 상관관계를 외국과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미국, 스웨덴에 비해 낮고, 남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한국의 소득-자산의 상관관계는 저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비슷해서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본절에서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를 살펴본다. 전병유·정준호(2014)의 연구에서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소득도 높은가가 연구의 대상이라면, 본절에서는 재산소득이 많은 가구(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근로소득도 많은가가 연구의 대상이다. 재산소득은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산소득이 많다는 것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상관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가/노동자 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본가와 노동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계급분리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임금과 사업소득을 합한 것이다. 사업소득의 성격이 항상 문제가 된다. 조사자료에서 사업소득은 주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임금과 이윤이 함께 들어 있는 혼합소득(mixed income)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의 보유에 따른 소득과 나머지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표 4-5>에서는 자료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파악정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총임금은 약 523조 원으로 파악되었는데, 국세자료 연말정산자료나 국민계정의 임금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총액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행정자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4조 원이 파악되었는데, 국세자료의 62조 원(부동산 사업소득 제외)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다. 세금보고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과소보고되고 있다는 상식과 부합한다.

배당과 이자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세자료에서 잘 포착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세자료에서 매우 과소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 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을 합한 재산소득의 경우, 가

<표 4-5>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자료, 국민계정에서의 소득 비교

(단위: 십억 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자료	국민계정
근로소득	523,437 임금	582,565 연말정산 총급여+ 일용소득+퇴직금	559,398 임금 및 급여+ 퇴직금
사업소득	204,715	62,725	164,310
재산소득	36,087 배당+이자+ 부동산임대+연금	71,504 배당+이자+ 부동산사업+연금	61,215 배당+이자+임료

주: 사업소득 = 총수입 - 총비용(부동산수입은 재산소득으로 봄). 국민계정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재산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계정에서 임료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국세자료·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36조 원 정도가 파악되는 반면 국세자료에서는 71조 원 정도가 포착되고 있어서,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조사자료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포착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보여준다.

재산소득이 과소포착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사통계의 장점도 있다. 국세통계와 같은 소득집단별 통계를 이용하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만 알 수 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가구별 소득정보를 이용하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결합분포의 비대칭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association matrix)을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표 4-6>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행렬을 보여준다. 자본소득 80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자본소득의 값이 0인 점을 감안하여 각 요소소득의 80분위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상위 0.5% 이상(>P99.5)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면 두 소득이 만나는 칸에서 빈도는 0.5%가 된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순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두 소득이 만나는 칸에서 빈도는 0.0025%가 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결과 해당 칸의 빈도는 0.05%이다. 미국에서 조세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Atkinson and Lakner, 2015) 이 값이 2000년에 0.13%이다. 최상위 소득에서 한국에서 재산소득과 근

<표 4-6> 결합 행렬

(단위: 빈도, %)

재산소득 \ 근로소득	<P80	P80~90	P90~95	P95~99	P99~99.5	>P99.5	합
<P80	65.70	7.60	3.43	2.77	0.29	0.21	80
P80~90	7.59	1.16	0.69	0.48	0.05	0.04	10
P90~95	3.63	0.63	0.34	0.30	0.04	0.05	5
P95~99	2.49	0.52	0.46	0.36	0.07	0.09	4
P99~99.5	0.32	0.04	0.04	0.06	0.02	0.02	0.5
>P99.5	0.21	0.09	0.03	0.07	0.05	0.05	0.5
합	80	10	5	4	0.5	0.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로소득의 결합정도가 미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조사자료를 이용한 것이고 미국은 최상위 소득을 더 잘 포착하는 조세자료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 관계의 비대칭성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이 최상위 0.5% 이내인 가구가 재산소득 1~0.5%에 속하는 경우는 0.05%이다. 반면 재산소득이 최상위 0.5% 이내인 가구가 노동소득 1~0.5%인 경우는 0.02%이다. 근로소득 최상위 0.5% 이내의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 집단에 속할 빈도가 자본소득 최상위 0.5% 이내의 가구가 노동소득 최상위 집단에 속할 빈도보다 높다. 즉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 비대칭 관계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미국에서는 소득 1% 수준에서도 비대칭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한국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대칭성은 매우 높은 소득수준(0.1%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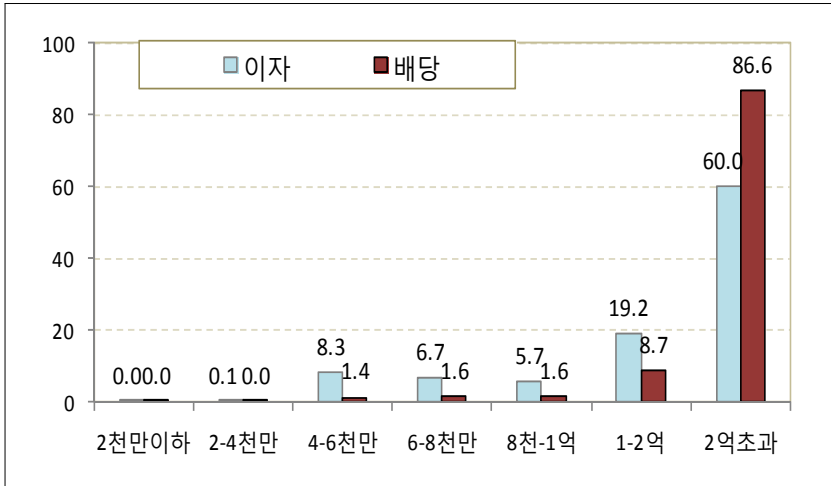
재산소득에는 배당, 이자, 임대소득이 있다. 이 절에서는 국세통계와 부동산 관련 조사통계를 이용하여 재산소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금융소득(배당, 이자)

[그림 4-4]에서는 국세통계에서 포착된 이자와 배당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의 가로축은 종합소득을 가리킨다. 세로축은 분포(%)를 가리킨다. 조세단위가 개인이므로 국세통계에서 단위는 개인이다. 총소득 2억

(그림 4-4) 국세통계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포(2012년 귀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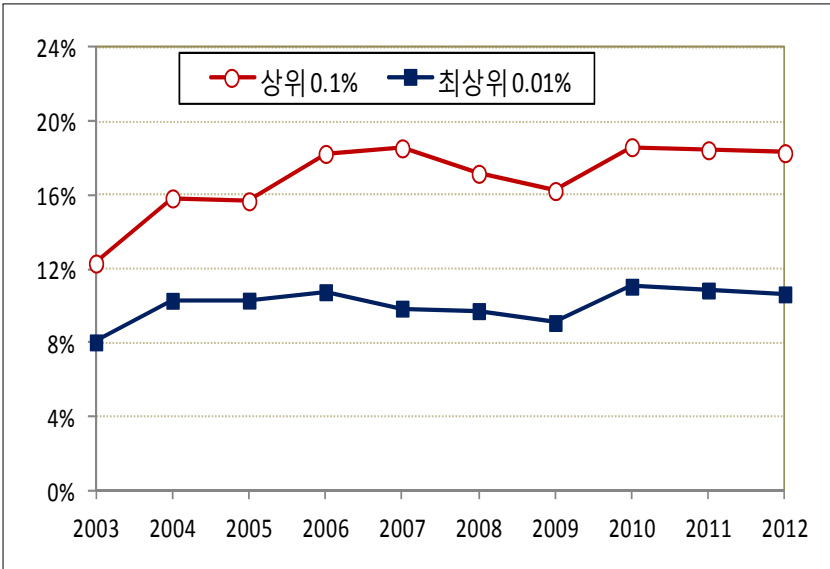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원이 넘는 사람들이 배당의 86.6%를 가져간다. 총소득 1억~2억 원인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8.7%를 가져간다. 총소득 1억 원이면 소득상위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를 가져간다.¹⁴⁾

총소득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총 이자의 60%를 가져가고, 1억~2억 원인 사람들이 총 이자의 19.2%를 가져간다. 따라서 소득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의 분포가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료에서는 총소득이 1억 원인 가구도 매우 적게 포착된다. 개인으로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4)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구당 이자, 배당 금액을 살펴보았는데 국세통계의 금액에 비추어 매우 적은 값이어서(예를 들어, 국세통계에서 총 이자금액은 39조 원인데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자수입 총금액은 2.4조 원임) 국세통계의 분포가 실제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4-5] 최상위 금융소득 집단의 금융소득(배당+이자) 비중 추이



주: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홍민기(2014), p.121, [그림 6-6].

[그림 4-5]에서는 최상위 금융소득 집단의 금융소득 집중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세 이상 인구의 0.1%가 금융소득의 약 18% 정도를 가져 간다.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

임대소득은 크게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상업용 건물로부터의 임대소득, 토지임대료로 나눌 수 있다. 기타 공업용, 문교사회용 건물의 비중은 매우 적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자료나 조사자료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소득이 실제보다 상당히 적게 파악되고 있다. 이 항에서는 최근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자 한다.

상업용 부동산은 크게 오피스와 매장¹⁵⁾으로 나뉜다. 오피스와 매장 면적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통계연보’를 이용할 수 있고, 면적당 임대료나 영업수입에 대한 정보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얻는 수입은 크게 임대료와 기타수입으로 나뉜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조사하며,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환율¹⁶⁾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으로 환산한다.¹⁷⁾ 예를 들어, 2013년 4/4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11.8%이다.

<표 4-7>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매장용 월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6만 원이고, 1평당 약 2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16개 지역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면적과 면적당 임대료를 곱하여 지역별 총 임대료를 계산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연간 총 108조 원으로 추산된다. 단, 여기서 사용한 면적당 임대료는 월세액과 더불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므로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얻는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부동산 소유주가 받은 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축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부동산 소유주체를 따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 가계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전체에 해당한다. 2012년 용도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상업지역토지 516km² 가운데 개인소유는 121km²로 23.4%

15) 오피스는 기업 등이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 본사, 제조업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공간(건물)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을 말한다. 매장은 일반적으로 ‘일반상가’라고 지칭되는 건물유형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주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유치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16) 전환율은 임대인의 요구수익률로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 또는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 보증금). 예를 들어 현재 전세기준 임대료가 1억 1천만 원인 건물이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환율은 12%다. 즉, (100만 원 × 12) / (1억 1천만 원 - 1천만 원) = 0.12 (12%)

17)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등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표 4-7〉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정(2013)

	상업용부동산 면적 (㎡)	오피스임대료 (월, 천 원/㎡)	매장용임대료 (월, 천 원/㎡)	오피스비중	연임대료 (십억 원)
서울	159,682,342	20.4	59.7	0.918	45,364
부산	46,700,138	7.9	29.1	0.895	5,670
대구	33,183,594	7.5	23.6	0.908	3,566
인천	35,410,129	9.3	31.8	0.870	5,192
광주	20,319,513	6.2	22.3	0.894	1,919
대전	21,007,633	4.9	18.6	0.877	1,651
울산	14,261,093	8.3	18.2	0.867	1,643
경기	147,223,303	11.5	31.9	0.893	24,148
강원	26,269,996	6.8	20.9	0.879	2,678
충북	20,341,943	4.6	21.4	0.841	1,781
충남	26,465,066	7.3	14.1	0.880	2,578
전북	24,493,146	4.1	15.6	0.882	1,613
전남	23,785,171	5.7	11.4	0.829	1,908
경북	33,927,107	7.4	14.5	0.865	3,405
경남	40,603,157	6.5	16.3	0.898	3,666
제주	14,070,918	4.7	12.5	0.862	967
전체					107,749

자료: 국토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를 차지한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수취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25.3조 원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이익을 추산하여 보았다.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임대수입+기타수입-운영경비이다. 임대수입은 월세수입, 보증금 운영수입, 실비, 관리비를 합한 것이다.¹⁸⁾ 기타수입은 주차수입, 회의실 임대수입, 자판기 관련수입, 광고판 및 송신탑 임대수입, 창고임대수입 등을 합한 것이다. 운영경비는 건물관리와 관련된 비용¹⁹⁾을 말한다.

18) 보증금 운용이율은 통상 CD 91일물 금리를 적용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9) 구체적으로 운영경비에는 청소비용, 시설유지비용, 수도광열비용, 주차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보안경비, 조경관리비용, 임대관련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이 있다.

<표 4-8>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상업용 부동산 면적과 면적당 순영업소득을 곱하여 지역별 영업소득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013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은 연간 총 227조 원으로 추산된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토지 중 개인 소유 비중 23.4%를 적용하면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은 총 53조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계산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와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직접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경제대차대조표의 통계와 대조해 보는 작업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임대료의 가치로부터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8>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 추정(2013)

	상업용부동산 면적 (m ²)	오피스 순영업소득 (월, 천 원/m ²)	매장용 순영업소득 (월, 천 원/m ²)	오피스비중	연간 총영업소득 (십억 원)
서울	159,682,342	52.7	63.7	0.918	102,666
부산	46,700,138	20.6	27.3	0.895	11,943
대구	33,183,594	19.3	24.0	0.908	7,850
인천	35,410,129	22.3	34.6	0.870	10,166
광주	20,319,513	11.1	20.7	0.894	2,960
대전	21,007,633	11.3	16.1	0.877	3,000
울산	14,261,093	21.1	23.2	0.867	3,660
경기	147,223,303	27.9	33.1	0.893	50,208
강원	26,269,996	17.1	20.0	0.879	5,493
충북	20,341,943	10.2	19.5	0.841	2,860
충남	26,465,066	12.4	15.8	0.880	4,057
전북	24,493,146	9.0	13.9	0.882	2,814
전남	23,785,171	15.2	10.9	0.829	4,129
경북	33,927,107	15.6	15.8	0.865	6,363
경남	40,603,157	13.6	17.5	0.898	6,808
제주	14,070,918	9.8	15.1	0.862	1,782
전체					226,758

자료: 국토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표 4-9〉 기업과 가계의 건설 및 토지자산(2013)

(단위: 십억 원)

	주거용 건물토지	비주거용 건물토지
정 부	49,119	610,570
기 업	141,729	1,297,836
가 계	2,956,606	572,419
전 체	3,147,454	2,480,824

자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건설자산=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토목건설.
토지자산=주거용건물부속토지+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농경지+임야+기타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3년에 가계가 보유한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자산액은 572조 원이다. 여기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나오는 2013년 상업용 부동산의 소득수익률((임대소득-경비)/자산가격) 4.97%를 적용하면,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로부터 추정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 가운데 가계가 수취하는 금액은 28조 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약 25.3조 원이었고, 운영업소득은 53조 원이었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건물 토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28조 원이었다. 앞의 계산에 임대료는 월세와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53조 원은 개인 상업용 부동산으로 발생한 수입의 상한값이라고 해석된다.

부동산 매매차익은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추산한다. 국민계정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주택가치 상승분은 약 103조 원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거래량은 전체 주택의 7.6%에 해당한다. 이 두 정보를 이용하면 건물 매매차익(즉, 양도차익)액은 7조 8,499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자료에서 건물 양도차익은 4,146억 원인 것으로 나온다. 한편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이 쉽지 않다. 다만 국세자료에서 토지 양도차익은 건물양도 차익의 거의 2배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를 적용하면 2013년 토지 양도차익은 약 15조 원에 이

를 것으로 추산된다.

3. 소득 불평등과의 관련성

최근 자산/소득 비율이 관심을 끈 것은 피케티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소득대비 자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자본소득의 상대적 몫이 증가하여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자산/소득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 때문이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다(Bonnet et al., 2014; Homburg, 2014; Knibbe, 2014). 주택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산/소득값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피케티가 제시한 통계를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케티가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로부터 자본소득의 증가를 직접 연결시킨 것은 그가 자산과 자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만약 자산을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내구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이다. 주택은 사용기간 동안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판매를 통해 실현된다. 내구소비재인 측면에서 주택은 자동차, 냉장고, 책상과 다르지 않다.

주택은 투자재, 즉 자산의 역할도 한다. 주택가격의 상승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원에 집을 사서 시가가 5억 원으로 올라도, 그 집에서 살면 재산가치만 상승할 뿐 추가적인 소득은 없다. 매매차익은 실현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1억 원에 집을 사서 5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벌어서 5억 원에 새집을 사는 것과 매매차익을 누리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가주택자에게 재산가치의 상승은 소비나 차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재산가치의 상승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집단에 한정된 것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제5절 소 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로 보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만약 자산을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association matrix)를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

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금융소득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는 약 25.3조 원이었고 순영업소득은 53조 원이었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건물 토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28조 원이었다. 임대동향조사로 계산한 순영업소득은 월세와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소득의 상한값이라 해석된다. 부동산 매매차익은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면, 2013년 건물 매매차익(즉, 양도차익)액은 7조 8,499억 원으로, 2013년 토지 양도차익은 약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적으로 임대료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얻는 불로소득으로 보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재산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점차 부동산 임대료를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향이 생기면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 현재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국세청,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서 1960~70년대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합쳐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임대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통계를 제시하여 연구자가 소득의 면모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 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세는 소득주체의 측면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며,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득과세와 자본소득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중 이자, 배당, 임대료,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자본소득세에 속하고, 법인소득세와 함께 넓은 범주의 자본소득세를 형성한다. 노동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다.

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세의 공평성 또한 어떤 개념의 소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소득원천설을 채택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는 공평과세의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할 경우에는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의 채택 여부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극단적인 이원적 소득세 체계에서는 이중과세를 이유로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과거 개발시대의 구조적 특성, 즉 자본축

적과 저임금노동의 지원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총소득 대비 실제의 세 부담(평균실효세율)이 낮은 상태에 있다.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는 과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채권의 거래차익과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로 평균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정적자의 폭과 국가채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보편적이고도 누진적인 증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증가로 내수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공평과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매우 긴요한 시점에 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불공평 과세는 소득창출행위에 있어서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에서는 소득의 개념을 검토한 후 포괄적 소득과세와 이원적 소득과세의 원리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과세소득과 과세체계를 살펴본 후 자본소득세율과 노동소득세율을 비교한다. 제4절에서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 간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한 후 공평과세 방안을 제시한다. 제5절은 요약과 정책 제안이다.

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1. 소득의 개념

소득세는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획득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득의 정의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²⁰⁾ 소득에 대한 정의는 크게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로 구분된다. 먼저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소득은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발생원천별로 구분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은 노동·자본·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요소공급의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이자·이윤·임대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본이득과 불규칙적인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과세소득의 개념은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각종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한편 순자산증가설(경제력증가설)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순자산 또는 경제력 증가의 화폐적 가치를 소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소득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상속과 증여, 자본이득, 복권수입 등을 모두 소득으로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 Schanz(1896)는 “주어진 기간 중 경제주체의 순자산 증가”로, Haig(1921)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경제력 증가의 화폐가치”로, Simons(1938)는 “개인이 자기의 부의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을 정의했다. Fisher(1906)는 소득을 재산 또는 사람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산액(産額 yield)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 있어서 소득은 소비의 다른 표현이었지만, 종국적으로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자산가치의 증가를 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0) 소득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필우·유경문(2003)과 우명동(2007) 참조.

2. 포괄적 소득과세

어떠한 개념의 소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세법상 과세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원천설에 근거할 경우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순자산증가설에서는 포함된다. 소위 S-H-S(Schanz-Haig-Simons)의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소득과세는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순자산의 증가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를 채택하게 된다.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누진세와 결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소득과 부의 축적은 개인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과도한 불평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총소득 또는 부는 소비보다 적절한 과세표준이 된다.²¹⁾

순자산증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포괄적 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한다.²²⁾ 첫째, 비주기적 소득도 경제력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비과세할 경우 조세회피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이윤을 배당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여 주식가격의 인상을 통한 거래차익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둘째,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동일한 소득은 동일한 경제력을 갖는다. 물론 동일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획득하는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소득의 객관적인 구매력은 소득의 원천과는 무관하다. 셋째, 납세자는 다양한 소득원천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하기 때문에 개인의 담세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이 보다 적절한 지표이다. 특히 포괄적 소득세에 입각한 종합소득과세 방식은 다양한 소득을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을 달성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 강화되며, 비과세되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소득 간 선택행위에 있어서도 중립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21) 자세한 내용은 Pechman(1977)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이필우·유경문(2003), pp.486~489 참조.

반면에 포괄적 소득과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소득에는 고용주의 현물급부와 사회보험료 부담분, 보유주택이나 내구재로부터 발생하는 귀속소득(imputed income), 부동산이나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실현자본이득, 사회보장급부나 이전지출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평가 및 과세행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순자산의 화폐가치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소득의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자산가치의 변화는 단순히 미래소득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종합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초래한다.

포괄적 소득과세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세단계에서는 과세소득과 과세방식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귀속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에 대해 실현주의를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동결효과란 자산소유자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득의 실현시기를 미래로 연기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산거래의 동결현상이다. 동결효과는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보유기간의 최적화를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 물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는 과세표준을 물가수준에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²³⁾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먼저 집적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분류소득세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원천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이다.

23) 광태원(2000)에 따르면, 집적효과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연도에 집중해서 발생한 소득을 여러 해에 분산하여 과세하는 평균화 방법과 별도의 세율체계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법이 있다.

분리과세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자 및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한편 포괄적 소득세의 대안으로 지출세(expenditure tax)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지출세에서는 소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며, 장부상의 소득이 아니라 순현금흐름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미실현소득과세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Fisher는 자산가치의 증가를 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에도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소득세보다 지출세를 선호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출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Hall and Rabushka(1995)의 평률세(flare tax)는 자본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모든 종류의 투자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선형지출세(liner expenditure tax)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도입된 평률세는 자본소득의 일부 또는 모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포괄적 소득세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이원적 소득과세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는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세율(flat tax rate)과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결합한 것으로 포괄적 소득세와 지출세의 절충적인 과세방식이다.²⁴⁾ 순수한 이원적 소득세 체계에서는 자본소득 세율이 법인소득세율 및 근로소득 최저세율과 일치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근거로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과세과정을 거친 근로소득의 일부를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

24) 자본소득에는 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 저작권 사용료, 자가 소유자의 귀속 소득, 비법인기업에 투자된 자본의 귀속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원적 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rensen(2010) 참조.

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Chamley(1986)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할인율과 개인적 할인율이 일치하는 점을 보이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했다. 또한 Gordon(1986)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말고 근로소득에 직접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Erosa and Gervais(2002)는 세대중첩모형을 이용하여 균제상태에서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Hamilton(1987)은 임금이 불확실한 경우 이자에 대한 과세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Park(1991)은 차별적인 능력을 보유한 개인들로 구성된 동일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재분배정책을 위해 자본소득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고, Sorensen(2007)은 지역에 고유한 지대(location-specific rent), 자본이동의 불완전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적 제약 등으로 원천지 자본소득세(source-based capital income tax)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Findeisen and Sachs(2014)는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자본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자본소득세는 후생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²⁵⁾

극단적으로 자본소득과세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자본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소득세는 명목자본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따라서 노동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부과할 경우 자본소득의 세부담은 과도해진다. 둘째,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해야만 자본이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하면 자본소득 간 과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원적 소득세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동결효과(lock-in effects)로 인한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조세거래(tax arbitrage)로 인한 조세회피행위, 고객효과(clientele effects)로 인한 자산의 생산성 저하, 조세행정의 단순화 등을 근거로 자본소득에 대해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율의 적용을 주장한다.

25) 자본소득과세의 찬반양론에 대해서는 김유찬(2012) 참조.

하지만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시켜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자본이탈은 주로 법인세 같은 원천지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이지 개인소득세와 같은 거주지 과세방식하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과 일치시켜야 하며, 법인소득세율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자본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법인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율을 개인소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원적 소득세를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낮은 자본소득세율을 자본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수익(normal rate of return)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원적 소득세가 노르딕 국가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는 자본소득 전체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주식의 정상수익에 대해서만 낮은 자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노동소득 최고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 자본소득세율을 차등화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원적 소득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표 5-1>에서는 노르딕 국가의 이원적 소득세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자본소득 단일세율은 각각 30%와 27%이고, 핀란드는 30~32%의 2단계 자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본소득세율은 근로소득 최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르웨이의 법인소득세율은 자본소득세율과 같지만, 스웨덴과 핀란드의 법인세율은 자본소득세율에 비해 낮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은 마이너스의 자본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

〈표 5-1〉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201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개인소득세율			
자본소득	30	27	30~32
근로소득	31.9~56.9	27.0~39.0	26.2~51.5
부의 자본소득	세액공제	타소득 소득공제	자본소득 소득공제
법인소득세율	22	27	20

자료 : Sorensen(2010). www.oecd.org (OECD.Stat)

를 완전하게 해소하지는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상장기업은 법인과 개인 소득을 통합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간주수익률(imputed rate of return)을 초과하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자본소득세를 부과한다. 핀란드의 경우 상장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70퍼센트만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의 간주소득(imputed return)을 초과하는 배당금의 70퍼센트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현황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득세에 속하는 세목은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세(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순자산증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기존의 지방세를 2010년부터 단일의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과세체계로 전환하였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규정하고,²⁶⁾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별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여 집결효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구체적으로 기밀비(판공비)·교제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

2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다. 포괄주의 방식은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열거주의 방식은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과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4) 참조.

가 동원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기타 공납금 중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 등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조에서는 이자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환매조건부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앞의 ①~⑦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앞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익으로부터의 이익. 이 중 ⑧과 ⑨는 이자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이다. 다만, <표 5-2>에 제시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에서는 배당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²⁷⁾,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하

27)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4) 참조.

〈표 5-2〉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근거	비고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12조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의2	201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201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이자소득 (예탁금 1인당 3천만 원 이하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9조의3	2007.1.1.~2015.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4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자료 : 기획재정부(2014).

는 금액, ⑧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⑨ 앞의 ①~⑧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 앞의 ①~⑨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익으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⑨와 ⑩은 배당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이다. 다만, <표 5-3>에 제시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밭 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과 그 외 연 2천만 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소득,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 원 이하의 산림소득.

〈표 5-3〉 비과세 배당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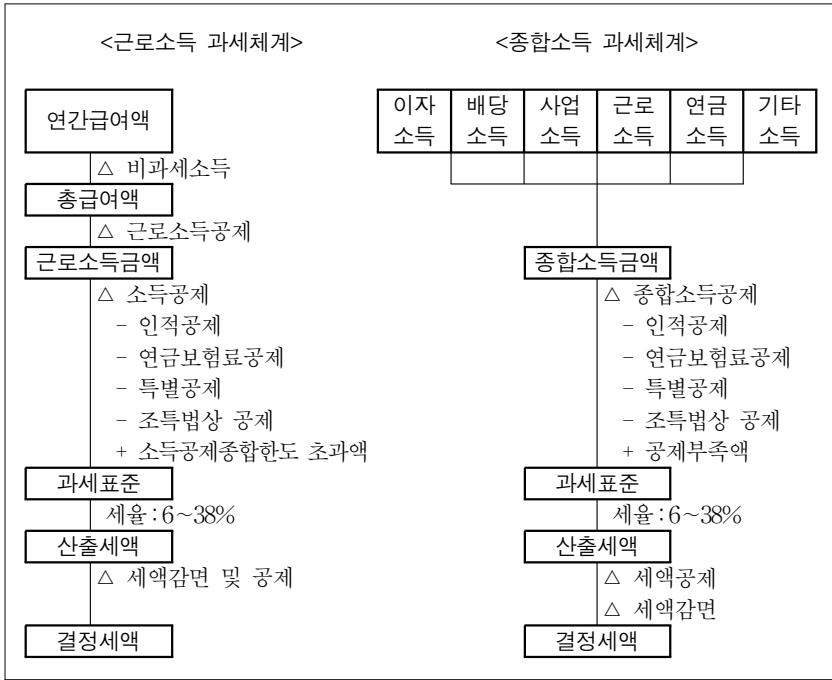
비과세 배당소득	근거	비고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12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201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액면가 1,800만 원 이하의 보유자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출자금 1인당 1천만 원 이하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5	2015.12.31.까지 수령분에 한함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0	200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자료 : 기획재정부(2014).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2002. 1. 1. 이후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후자는 세액공제(기존의 소득공제 포함) 받은 금액 또는 이연퇴직소득을 기초로 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전속계약금,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수여하는 각종 상금·보조금, 직무발명보상금, 과학전람회 입상 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소득세 과세체계는 근로소득과세와 종합소득과세로 구분된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이 종결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

(그림 5-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체계



자료 : 국세청(2014), 『2014 국세통계연보』.

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²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으로 구성되고,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포함된다. 조세감면특별법상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세액감면 및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조약상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

28) 근로소득공제는 5단계로 구분되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1,475만 원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고,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 원을 공제받는다. 연금소득의 경우 4단계로 구분되며,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하지만,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30만 원에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각각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이고,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각각의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다.

〈표 5-4〉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소득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개인당 연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4%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세부담이 높게 된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더해진다.

한편 분류과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 이상(코스닥, 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식은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코스닥 및 벤처기업 주

〈표 5-4〉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8%

식은 40억 원, 코넥스 주식은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과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과점주주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다. 주식과 달리 파생금융상품과 채권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다.

부동산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 때 주택에 속한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농어촌지역에 이농(귀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소제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상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토지·건물 및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의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일반건물

과 토지의 경우 연 3%(최대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 8%(최대 8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누어 각각 연간 1인당 250만 원이다. <표 5-5>에서 보듯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38%지만, 자산 유형별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주택 40%)가 부과되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기업규모와 보유기간별로 달라진다. 중소기업 주식과 중소기업 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영업권과 시설물이용권에 대해서는 기본

<표 5-5> 양도소득세율

		세율(%)	
		국내분	국외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보유	50(주택 40)	6~38 ¹⁾
	1~2년 미만 보유	40(주택 6~38)	
	2년 이상 보유	6~38 ¹⁾	
	1세대 3주택 이상 ²⁾	6~38	
	1세대 2주택 ³⁾	6~38	
	비사업용 토지 ²⁾	6~38	
미등기전매	70		
주식 및 출자지분	중소기업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일반 20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기타자산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6~38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기본세율+10%포인트	

주: 1) 2011. 12. 31. 이전 양도분은 6~35% 적용.

2) 2009. 3. 16.~2012. 12. 31.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2009. 3. 16.~2013. 12. 31.의 기간에 양도하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3) 2015. 1. 1. 이후 양도분은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가산하여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2014).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16~48%를 부과한다.

2. 소득과세의 국제비교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보유과세와 이전과세로 구분된다.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보유세와 부유세(tax on net wealth) 등 재산보유과세는 자산의 증가분이 완전하게 과세대상으로 포착되지 못하거나 재산에 의해 실현된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이 불완전하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의 불균등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생존 시 비과세감면과 탈세 등 조세부담의 과소로 인하여 축적된 재산에 대해 소급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공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²⁹⁾

<표 5-6>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GDP 대비 7.4%로 OECD 회원국 평균 11.4%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은 개인소득세의 낮은 비중에 있다. 2012년에 개인소득세수는 3.7%로 OECD 회원국 평균 8.6%보다 크게 낮은 반면 법인세수는 3.7%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GDP 대비 2.6%로 OECD 회원국 평균 1.8%보다 높은 이유는 금융·자본거래세의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대주주 이외의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세제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본거래세의 세수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수는 평균보다 높지만 그 비중이 작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개별기업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제조업의 높은 비중 등으로 법인세 과세

29) 재산보유과세와 재산이전과세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우명동(2007) 참조.

〈표 5-6〉 주요국의 소득세 및 재산세 세수현황(2012)

(단위: GDP 대비 %)

	소득세			재산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유세	상속 증여세	금융·자본 거래세
한국	7.4	3.7	3.7	2.6	0.7	0.0	0.3	1.6
일본	9.2	5.5	3.7	2.7	2.1	0.0	0.3	0.3
미국	11.7	9.2	2.5	2.9	2.8	0.0	0.1	0.0
영국	11.8	9.1	2.7	3.9	3.2	0.0	0.2	0.5
스웨덴	14.5	11.9	2.6	1.0	0.8	0.0	0.0	0.2
덴마크	29.2	23.9	3.0	1.8	1.3	0.0	0.2	0.3
독일	11.1	9.3	1.8	0.9	0.4	0.0	0.2	0.3
프랑스	10.4	7.9	2.5	3.8	2.5	0.2	0.5	0.6
그리스	8.2	7.0	1.1	1.9	1.1	0.2	0.0	0.4
이탈리아	14.0	11.6	2.8	2.7	1.5	0.0	0.0	0.9
OECD 평균	11.4	8.6	2.9	1.8	1.1	0.2	0.1	0.4

주: 소득세는 소득, 이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성되며, 부유세는 순부(net wealth)에 대한 과세임.

자료: www.oecd.org (OECD.Stat)

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소득세 비과세자 비중이 높으며,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자본소득의 경우 낮은 명목세율과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작다.

먼저 이자소득세의 과세방식은 기존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과 별도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 FW)와 예납적 원천징수(preliminary withholding: PW)로 구분된다. 예납적 원천징수에서는 추후 정산을 통해 개인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완납적 원천징수는 그 자체로 세 부담이 종결된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은 이자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은 PW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투자지수(investment balance)의 가치를 기준으로 0.6%의 예납적 원천징수를 적용하며, 총소득이 MXN 400,000이면서 이자소득이 MXN 100,00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이자소득세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납적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된다. 완납적 원천징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호주,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통해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1.8%를 과세하고 있다.

법인실제설에 따르면 법인(legal person)은 법률상 개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의제설에 입각할 경우 법인은 소득을 주주에게 이전하기 위한 도관(condit)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등은 귀속방식(imputation system)을 통해 법인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법인세 납부 후 이윤을 재투자하여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체계의 함수이다.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개인단위에서만 과세된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23개 국가에서 주식, 20개 국가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5-7>에서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은 각각 41.8%와 24.2%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개인 자본소득세율의 경우 적용 기준에 따라서 OECD 회원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로 인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갖는 개인소득자가 적용받는 15.4%의 분리세율은 OECD

〈표 5-7〉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최고세율의 국제비교(2012)

(단위: %)

	근로소득 세율	법인소득 세율	자본소득세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주식	부동산
한국(A)			15.40	15.40	39.60	0.00	0.00
한국(B)	41.80	24.20	41.80	25.91	50.11	20.00	29.26
일본	50.00	39.54	20.00	6.30	45.84	6.30	20.00
미국	41.78	39.13	41.85	12.97	52.10	12.97	-
영국	50.00	24.00	50.00	27.44	51.44	21.28	28.00
캐나다	47.97	26.10	47.97	23.41	49.51	17.72	23.99
호주	47.50	30.00	46.50	16.50	46.50	16.28	23.25
뉴질랜드	33.00	28.00	33.00	5.00	33.00	0.00	0.00
아일랜드	48.00	12.50	30.00	42.00	54.50	42.00	30.00
아이슬란드	46.24	20.00	20.00	16.00	36.00	16.00	20.00
스웨덴	56.60	26.30	30.00	22.11	48.41	22.11	30.00
노르웨이	40.00	28.00	28.00	12.46	40.46	12.46	28.00
핀란드	49.00	24.50	30.00	16.91	41.41	24.16	32.00
덴마크	60.23	25.00	45.50	31.50	56.50	31.50	45.50
독일	47.48	30.18	26.00	18.42	48.60	18.42	0.00
프랑스	54.41	34.43	44.00	26.56	60.99	25.57	0.00
오스트리아	50.00	25.00	25.00	18.75	43.75	18.75	12.50
벨기에	53.70	33.99	25.00	22.88	56.87	0.00	0.00
네덜란드	52.00	25.00	30.00	30.00	55.00	30.00	30.00
그리스	49.00	20.00	10.00	20.00	40.00	0.00	0.00
이탈리아	48.55	27.50	20.00	18.63	46.13	18.63	0.00
포르투갈	49.00	31.50	25.00	17.13	48.63	17.13	24.50
스페인	52.00	30.00	27.00	18.90	48.90	18.90	27.00
체코	15.00	19.00	15.00	12.15	31.15	0.00	0.00
슬로바키아	19.00	19.00	19.00	0.00	19.00	15.39	0.00
헝가리	16.00	19.00	16.00	12.96	31.96	0.00	0.00
폴란드	32.00	19.00	19.00	15.39	34.39	15.39	0.00
에스토니아	21.00	21.00	0.00	0.00	21.00	16.59	21.00
슬로베니아	41.00	18.00	20.00	16.40	34.40	4.10	0.00
스위스	41.67	21.17	40.00	31.51	52.68	0.00	0.00
룩셈부르크	41.34	28.80	10.00	13.87	42.67	0.00	10.00
터키	35.66	20.00	15.00	14.00	34.00	0.00	0.00
이스라엘	48.00	25.00	25.00	18.75	43.75	15.00	25.00
칠레	40.00	20.00	40.00	20.00	40.00	0.00	0.00
멕시코	30.00	30.00	30.00	0.00	30.00	0.00	30.00
OECD 평균	42.60	25.40	27.39	17.54	43.02	13.23	14.40

주: 모든 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며, 개인 자본소득세율은 투자수익률 4%와 내국인 투자자를 가정하여 산출. 자본이득은 장기보유를 기준으로 하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전적으로 사내유보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고,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은 투자자의 소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가정. 배당소득세율은 각국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적용하여 조정된 세율임. OECD 평균은 한국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

자료: Harding(2013). www.oecd.org (OECD.Stat)

회원국의 평균(이자소득세 27.39%, 배당소득세 17.5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41.8%와 25.91%의 세율이 적용되어 OECD 회원국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한 총세율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50.11%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9.6%로 평균보다 낮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도 적용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에게 10%(중소기업) 또는 20%(중소기업 외 주식)를 부과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한다. 부동산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5-7>에서 보듯이 OECD 회원국은 주식과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평균 13.23%와 14.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액주주 및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거래액의 0.3~0.5%)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세율은 0%가 아니다. 1주택 이상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최고 자본이득세율은 29.26%로 평균보다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전국 단위의 인별 토지소유 합산가액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조부유세(gross wealth tax)이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의 3개 유형별로 별도의 과세표준, 공제규정, 세율체계를 갖고 있다. 세수는 2007년 2조 4,143억 원에서 2013년 1조 2,243억 원으로 감소하여 국세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결정세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23만 3,124명)과 법인(1만 3,073개)에게 1조 3,074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9만 1,648명, 2,364억 원), 종합합산토지분(6만 196명, 6,194억 원), 별도합산토지분(6,476명, 4,516억 원)으로 구성된다.

3. 노동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의 국제비교

Mendoza et al.(1994) 이후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목별 평균유효세율(tax ratio)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 추정방식은 가계부문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중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Carey and Rabesona(2002)와 Antón-Sarabia(2005) 등의 후속 연구는 가계부문의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를 고려하고, 자본소득에 부여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Carey and Rabesona(2002)의 추정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했다.³⁰⁾ <표 5-8>에서 OECD의 Revenue Statistics와 National Account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각각 16.7%와 31.7%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1990~2000년의 기간에 대해 분석한 Carey and Rabesona(2002)의 추정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각각 9.9%와 22.5%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자본소득세율의 증가보다 노동소득세율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에 노동소득세율의 경우 비교되는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12.8%포인트 낮고, 자본소득세율(1)과 자본소득세율(2)는 평균 대비 각각 12.8%포인트와 5.2%포인트 낮다.³¹⁾

30) 본 연구에서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한 방식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했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소득세율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31) OECD(2001)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박형수 외(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 2.0%에서 2010년 16.1%로 증가했고, 자본소득세율은 1975년 7.0%에서 2007년 33.1%로 증가한 이후 2010년 26.7%로 떨어졌다.

〈표 5-8〉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단위: %)

	Carey and Rabesona(2002)		추정치(2012년)		
	노동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1)	노동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1)	자본소득세율(2)
오스트리아	39.6	42.2	34.7	40.9	19.7
벨기에	41.3	51.4	39.0	64.4	26.0
체코	41.5	40.7	34.7	27.5	13.5
덴마크	39.9	71.9	30.4	87.7	37.3
핀란드	45.0	48.9	38.7	52.7	21.8
프랑스	40.5	55.9	35.4	77.4	33.6
독일	35.0	34.9	33.7	39.3	18.8
그리스	34.9	15.1	30.8	23.2	13.2
이탈리아	37.7	42.7	38.4	50.4	27.8
일본	24.1	50.0	28.9	32.3	17.1
네덜란드	36.4	52.8	30.5	42.1	22.7
포르투갈	23.9	28.1	21.8	35.5	17.6
스페인	30.7	28.8	28.4	32.2	17.3
스웨덴	49.6	69.9	30.8	48.1	24.3
스위스	30.9	53.2	18.2	65.5	24.7
영국	22.6	53.2	21.7	45.6	28.0
미국	23.5	39.5	18.2	40.2	23.1
한국	9.9	22.5	16.7	31.4	17.2
평균	33.7	44.5	29.5	44.2	22.4

주: 1) Carey and Rabesona(2002)의 추정치는 1990~2000년 기간의 평균값임.

2) 사회보장기여금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

3)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4) 자본소득세율 (1)과 (2)는 각각 순영업잉여와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임.

자료: Carey and Rabesona(2002)와 본 연구의 추정치.

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1. 과세공평성 평가

공평과세(tax equity)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공평성은 소득 간 세 부담의 차이를 문제시하는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동일 소득 내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정도를 문제시한다. 만약 노동소득세율에 비해 자본소득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노동소득을 가급적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작동하여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표 5-9>에서 보듯이 2013년 과세소득 기준 평균실효세율(총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은 근로소득 4.5%, 종합소득 13.8%, 양도소득 14.3%를 기록하여 양도소득이 가장 높지만, 소득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소득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규모에서 과세율은 근로소득에 비해 높지만,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규모에서 근로소득보다 과세율이 높지만,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낮다. 2013년 현재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각각 36.1조 원과 14조 원으로 총 50.1조 원에 달하지만 약 25%만 종합과세되고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4조 9,891억 원으로 10.0%에 불과하다.³²⁾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2013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 간 실효세율의 차이를 분석했다.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는 각각 16,360천 명과 4,565천 명이다. 먼저 [그림 5-2]에서 보듯이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9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분위와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2) 국세청(2014), 『2014 국세통계연보』 참조.

〈표 5-9〉 소득규모별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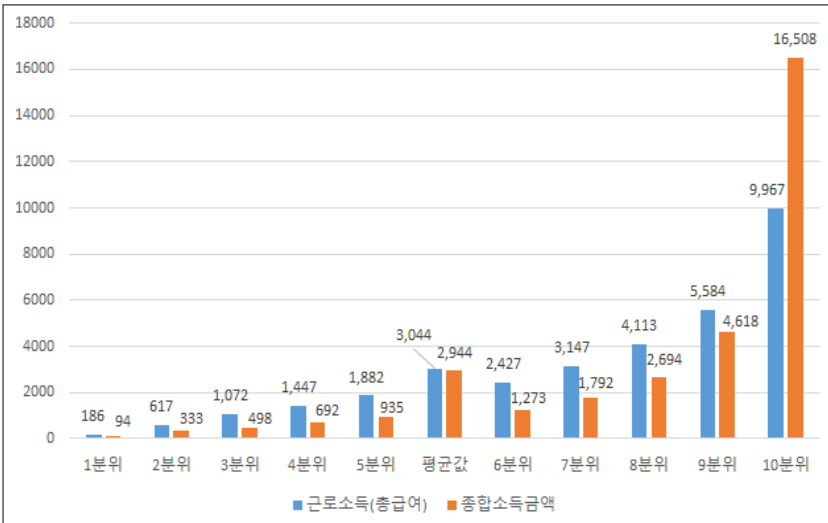
(단위: %)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전 체	4.5	13.8	14.3
1천만 이하	0.1	1.7	6.3
2천만 이하	0.4	2.9	7.1
4천만 이하	1.2	5.8	8.7
6천만 이하	3.0	7.6	9.8
8천만 이하	5.1	9.8	10.6
1억 이하	7.3	11.9	11.2
2억 이하	11.5	17.0	12.6
3억 이하	20.6	22.9	12.7
5억 이하	24.2	26.0	15.6
5억 초과	30.0	30.5	19.3

주: 조세부담률은 각 소득구간에 속한 모든 납세자의 결정세액 합계를 소득의 합계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개별 납세자의 평균실효세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2014), 『2014 국세통계연보』.

(그림 5-2) 소득분위별 1인당 소득

(단위: 만 원)



자료: 국세청(2013),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경우 평균값은 3,044만 원이지만, 5분위까지는 1인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점증적으로 상승하여 9분위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은 5,584만 원이다. 이에 비해 10분위에 속한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는 9,967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상위 1% 근로자의 경우 2억 2,268만 원으로 급상승한다. 종합소득자의 경우도 5분위 이하에서 1인당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9분위에서는 4,618만 원이지만, 10분위와 상위 1%의 경우 각각 1억 6,508만 원과 6억 6,547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비교에 이용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그림 5-1]에서와 같이 산출된다.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2013년 소득 10분위별 과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은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다. <표 5-10>에서 보듯이 전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은 각각 4.5%와 13.8%이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종합소득자보다 낮은 이유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악률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에 더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율은 각각 31.0%와 29.4%로 총 60.4%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보이고 있지만, 종합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은 24.5%에 그치고 있다.³³⁾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세제혜택을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더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5-10>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로 인한 감세액은 총 50.1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34.9%에 해당하는 17.5조 원이 상위 10% 소득계층에게 제공되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으로 인한 감세액은 총 7.7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5%에 해당하는 4.71조 원이 상위 10% 소득계층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감세액의 규모는 소득이 증가함에

33) 김재진(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 각종 소득공제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2012년 약 29조 7,317억 원의 국제감면 규모 중 소득세 감면규모는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10> 소득공제율 및 실효세율 현황(2013년)

(단위: 조 원, %)

	근로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공제				결정세액		소득공제			결정세액		
	공제액	공제율 (1)	공제율 (2)	감세액	실효 세율	비중	공제액	공제율 (3)	감세액	실효 세율	비중	
1분위	3.0	80.0	20.0	0.2	0.0	0.0	0.4	97.8	0.02	0.8	0.0	
2분위	10.1	75.3	24.7	0.6	0.0	0.0	1.3	82.5	0.08	0.8	0.1	
3분위	16.7	65.3	30.2	1.0	0.1	0.0	1.6	70.7	0.10	1.5	0.2	
4분위	21.3	60.5	29.4	1.7	0.3	0.1	2.0	63.2	0.13	1.9	0.3	
5분위	25.2	51.5	30.2	2.7	0.5	0.4	2.4	57.2	0.16	2.2	0.5	
6분위	29.4	43.2	30.8	3.9	0.7	1.2	2.9	49.5	0.23	2.6	0.8	
7분위	35.4	36.4	32.4	5.4	1.2	2.5	3.4	41.4	0.45	3.5	1.6	
8분위	43.1	30.2	33.9	6.9	2.1	5.6	4.2	33.8	0.67	5.5	3.7	
9분위	52.4	24.0	33.4	10.1	3.6	14.4	6.0	28.7	1.23	7.5	8.5	
10분위	64.0	16.8	22.5	17.5	10.1	75.8	8.7	11.6	4.71	20.8	84.3	
상위5%	6.3	17.1	27.2	1.6	7.0	4.6	0.86	17.8	0.35	13.6	3.5	
상위4%	6.5	16.1	26.2	1.8	7.8	5.4	0.86	15.2	0.41	15.7	4.8	
상위3%	6.8	15.1	24.7	2.0	8.9	6.7	0.86	12.3	0.47	18.5	7.0	
상위2%	7.1	13.8	22.4	2.3	10.5	9.4	0.91	9.3	0.59	21.9	11.5	
상위1%	7.9	9.2	12.4	3.0	20.2	33.6	1.3	4.4	1.70	28.8	47.2	
전체	300.8	31.0	29.4	50.1	4.5	100.0	32.9	24.5	7.79	13.8	100.0	

주: 공제율(1)=근로소득공제/총급여. 공제율(2)=소득공제/총급여. 공제율(3)=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 실효세율=결정세액/총소득. 비중은 분위별 소득공제(결정세액)의 합계가 전체 소득공제(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5).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한편 <표 5-11>에서 보면, 2013년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지니계수는 각각 0.482와 0.680을 기록하여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한

34)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각각 3조 1,880억 원과 437억 원으로 총 3조 2,317억 원을 기록했고, 종합소득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각각 1조 3,997억 원과 741억 원으로 총 1조 4,738억 원을 기록했다.

〈표 5-11〉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불평등도 및 조세집중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니계수	근로소득	0.503	0.501	0.511	0.498	0.483	0.482
	종합소득	0.686	0.675	0.684	0.691	0.677	0.680
	통합소득	-	-	0.547	0.539	0.528	0.526
Suits지수	근로소득	0.571	0.595	0.583	0.573	0.564	0.557
	종합소득	0.364	0.406	0.399	0.391	0.408	0.395
	통합소득	-	-	0.566	0.560	0.554	0.544

주: 통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

자료: 홍중학 의원실(2015).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중복소득을 제거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0.526을 기록했다. 반면에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2. 공평과세 방안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조세집중도가 높은 것은 누진적인 소득세율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불평등하고, 상위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조세집중도는 분배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중하위 소득집단의 낮은 근로소득을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로 보충할 경우 근로소득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의 사이에서도 공

35) Suits지수는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일 경우 가장 역진적이고, 0이면 비례적이고, 1이면 가장 누진적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Suits지수는 상대적 조세집중도와 지니계수의 차이이다. 즉 $S = C_Y^R - G_X$ 이다. 추정 방식에 대해서는 Arcarons and Calonge(2015)를 참조했다.

평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과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상위소득 집단에 대해 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큰 폭으로 줄이거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³⁶⁾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5-12>에서 보듯이 단신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합계의 차이는 평균임금(AW) 50% 수준에서 10.9%포인트이지만, 평균임금의 2.5배(AW250%) 수준에서는 17.01%포인트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하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노르딕 국가들조차도 자본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27~32%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하면 1인당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각각 36.1조 원과 14조 원으로 총 50.1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약 25%만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38%)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24%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36) Atkinson(2015)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한계 세율을 65%까지 올리면서 과세기반도 함께 넓힐 것을 주장했다. Piketty et al.(2014)에 따르면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세율은 83%까지 올라간다. 또한 Piketty(2014)는 10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 약 80%의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 성장의 결실을 보다 고르게 분배할 것으로 보았다.

〈표 5-12〉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률

(단위: %)

	임금수준	OECD 평균	한국	차이
근로소득세	AW 50%	6.91	0.91	6.00
	AW100%	13.31	4.61	8.70
	AW150%	17.44	7.53	9.91
	AW200%	20.40	10.59	9.81
	AW250%	22.42	12.98	9.44
사회보장기여금	AW 50%	21.80	16.81	4.99
	AW100%	22.55	16.81	5.74
	AW150%	22.08	15.29	6.79
	AW200%	21.15	13.76	7.39
	AW250%	20.41	12.83	7.63
전 체	AW 50%	28.62	17.72	10.90
	AW100%	35.85	21.41	14.44
	AW150%	39.52	22.82	16.70
	AW200%	41.55	24.36	17.19
	AW250%	42.82	25.81	17.01

주: 단신근로자 기준. 조세·사회보험료 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노동비용*100.
 자료: OECD.StatExtracts.(2015.2.21.)

정부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백만 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6.16%, 추가로 4백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3.08%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순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임대소득이 지하경제의 큰 축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가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더욱이 임대소득이 일종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공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 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세율(20%), 중소기업 주식(10%), 1년 미만 보유기간의 경우 30%,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대해 중소기업 10%, 그 외 주식은 20% 과세하고 있다. 2015년 2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8~10년 동안 5억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8.7%에 불과하지만,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9%에 달한다. 특히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강병구, 2014).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서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14년 자본이득 과세 최고세율을 15%에서 23.8%로 인상한 후,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28%로 인상하는 세계개편안을 언급했다.

한편 부유세의 주된 목적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거나 개인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³⁷⁾ 즉 부유세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

37) 부유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영훈(2012) 참조.

된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본소득 과약의 애로에 따른 추계 과세적 성격을 가진다.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부유세의 존재를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정률 과세의 근거로 제시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유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2012년 현재 부유세(OECD Revenue Statistics 기준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는 1982년 부유세를 도입한 이후 1987년 폐지했지만, 1989년 ‘사회통합적 자산세(Impot de Solidarite sur la Fortune: ISF)’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했고,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현금 확보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최고부자세(Impot sur les Grandes Fortunes: IGF)’라는 이름을 사회통합적 자산세로 변경하고, 세수의 사용을 ‘최저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 조세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있다.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면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 간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평한 과세는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개발시대의 조세체계를 복지국가시대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부담의 공평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비과세되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소득 간 선택행위에 있어서도 중립적일 수 있다. 특히 소득과 부의 축적은 개인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과도한 불평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총소득 또는 부는 소비보다 적절한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보상에 대한 과세,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 자본소득 간 과세공평성 제고, 동결효과로 인한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조세거래로 인한 조세회피행위, 고객효과로 인한 자산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주장되고, 현실의 조세체계에서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등 과세방식의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시켜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세율을 노동소득세율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법인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개인소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득세에 속하는 세목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재산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여 집결효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소득세수는 GDP 대비 7.4%로 OECD 회원국 평균 11.4%에 비해 낮고, 특히 개인소득세수는 3.7%로 OECD 회원국 평균 8.6%보다 크게 낮은 반면 법인세수는 3.7%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제조업의 높은 비중 등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소득세 비과세자 비중이 높으며,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자본소득의 경우 낮은 명목세율과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작다.

Carey and Rabesona(2002)의 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한 결과,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2012년에 각각 16.7%와 31.7%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추정상의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과세 현황을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종합소득자보다 낮은 이유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공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높고,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제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원적 소득세제하에서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부록 1〉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방법

식(1)과 식(2)는 각각 노동소득세율(t_l)과 자본소득세율(t_k)의 추정식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을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가구소득세율 추정식(t_h) 분모의 가구소득($OSPUE + PEI + W$)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빼준다. 연금에 대한 고용주기여금과 급여세(payroll tax)도 노동소득에 더해지기 때문에 노동소득세율 추정식(t_l)의 노동소득 과세대상에는 피고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뿐만 아니라 급여 및 종업원세(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3000)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은 자영업자 소득의 노동소득비율(α)만큼 노동소득에 배분되고, 나머지($1-\alpha$)는 자본소득에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³⁸⁾ 기타 사회보장기여금(2400)은 가구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β)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소득세율에 포함하고, 나머지($1-\beta$)는 자본소득세율(t_k)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든 재산세(4000)를 비롯하여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금(5125), 가계부문 이외의 부문에 부과된 자동차세(5212), 기타 영업세(6100) 등은 자본소득세율에 포함된다. Carey and Rabesona(2002)이 제안한 방식으로 이자, 배당금, 각종 연금저축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지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t_h)이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t_l = \left[\frac{t_h (W + \alpha OSPUE - T_3 - \alpha T_5 - \beta T_6) + T_3 + T_4 + \alpha T_5 + \beta T_6 + T_7}{WSSS + \alpha OSPUE + T_7} \right] \times 100 \quad (1)$$

$$t_k = \left[\frac{t_h [PEI + (1-\alpha)OSPUE - (1-\alpha)T_5 - (1-\beta)T_6] + (1-\alpha)T_5 + (1-\beta)T_6 + \theta}{NOS - T_7 - \alpha OSPUE} \right] \times 100 \quad (2)$$

$$t_h = \left[\frac{T_1}{OSPUE + PEI + W - (T_3 + T_5 + T_6)} \right] \quad (3)$$

$$\alpha = \frac{WSSS}{GDP - IT - OSPUE} \quad (4)$$

38)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대해서는 Gollin(2002)과 이병희(2015a) 참조.

$$\beta = (W + \alpha OSPUE - T_3) / (OSPUE + PEI + W - T_3 - \alpha T_5) \quad (5)$$

$$\theta = T_2 + T_8 + T_9 + T_{10} + T_{11} \quad (6)$$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추정에 필요한 변수는 <부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조세변수는 OECD의 Revenue Statistics, 거시자료는 OECD의 National Accounts로부터 추출했다.

<부표 1> 변수명

OECD Revenue Statistics		SNA National Accounts	
변수	설명	변수	설명
T_1 (1100)	개인소득세 (소득, 이윤, 자본이득)	W	종업원 임금 및 급료
T_2 (1200)	법인소득세 (소득, 이윤, 자본이득)	WSSS	피고용자 보수
T_3 (2100)	종업원 사회보장기여금	OSPUE	개인영업잉여(혼합소득)
T_4 (2200)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NOS	순영업잉여
T_5 (2300)	자영업자 사회보장기여금	GOS	총영업잉여
T_6 (2400)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PEI	이자, 배당, 투자수익
T_7 (3000)	급여세	GDP	국내총생산
T_8 (4000)	재산세	IT	간접세
T_9 (5125)	투자자에 부과된 세금	NIT	순간접세
T_{10} (5212)	가계부문 이외에 부과된 자동차세	CFC	고정자본소모
T_{11} (6100)	기타 영업세		

제 6 장

결론 :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연구결과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하였다. 자영자의 노동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가계소득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 순분원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하였다.

둘째,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또는 모의실험을 통한 요인분해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낮게 측

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복지의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늘어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머물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 이윤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늘어날수록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이 가구조사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소득분배의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노동시장 내부에서 찾아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교환하려는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비용 효율성에 치중한 기업 정책, 금융 정책, 공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경제산업정책의 공정성 회복과 공생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의 통합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임금 결정 시스템의 어떤 점이 불평등 확산을 제어하지 못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특히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시스템과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어 온 성과급제가 임금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 이에 따른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까움을 확인

하였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고 근속의 순수한 임금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 보면 10년 근속당 5~10% 임금인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 자료에서 관찰된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의 약 1/4~1/3 수준으로, 나머지 3/4 내지 2/3는 (관찰되지 않는) 능력이나 일자리 특성의 결과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추정된 순수한 근속의 효과는 비슷한 방법을 활용한 미국의 연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성과급이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완화시켰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실제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많이 받았을 사람들에게 성과보상까지 추가하는, 근속급을 보완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인해 중상위 임금불평등 강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최상위층에서 나타난 불평등 확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90%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성과급제 확산이 대략 2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 불평등 증대에서 성과급제 확산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최상위 10분위 임금계층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범위가 2000년 10% 수준에서 2007년 5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비성과급제에 있던 근로자들이 성과급제로 이동해 성과급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임금불평등 수준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고, 또한 성과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층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속급의 (직무)성과급제로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나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근속은 이미 그 자체로 개인의 능력이나 해당 일자리와 개인의 궁합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을 제외할 경우 구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임금 효과를 보인다. 모두가 비슷하게 근속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

록 제도로 개인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 일본식 근속급과 달리,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은 일본과는 외형만 유사할 뿐 능력 있는 개인에게 보상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더 가깝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근속이 긴 사람은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속급을 약화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 더 많은 사람들의 근속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생애임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속급에 성과급이 얹혀져 일부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형태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한다. 직무성과급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상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개별 기업에 (직무)성과급제 확산이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양극화의 반복일 것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서구 선진국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나라들이다. 가능한 업종부터 초기업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정책 메뉴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자산분포 혹은 자산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부족해서 많지 않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로 보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주택자산 상승을 주도하였다.

만약 자산이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외 주택, 계약금을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자산의 지니계수는 저축의 지니계수보다 약간 낮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자산은 전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을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는데,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 비대칭 관계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미국에서는 소득 1% 수준에서도 비대칭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한국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대칭성은 매우 높은 소득수준(0.1% 수준)에서만 나타난다.

금융소득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상위 소득 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 자료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았고, 이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 건물토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수익률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차익과 토지 양도차익을 추산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 간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평한 과세는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개발시대의 조세체계를 복지국가시대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제5장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Carey and Rabesona(2002)의 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된 결과,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2012년에 각각 16.7%와 31.7%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추정상의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과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지만,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공평성을 높이는 세계개편이 요구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하에서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장주식 및 과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노동정책을 중심으로³⁹⁾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소득분배구조의 다층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노동·금융·자산 시장 등에서 분배되는 과정, 조세 및 복지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분배정책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정책, 금융정책, 노동 및 사회정책 등에 걸쳐 정책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최근 분배의 개선을 통해 거시경제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장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은 다양한 차원과 경로를 통해 발생하므로 종합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하에서는 노동정책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은 고용 창출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였다. 비정규직과 외주화 등 주변 노동력에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의 한계적 유연화(flexibility at the

39) 이하의 내용은 대안적인 고용 모델에 관한 이병희(2015b)의 논의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margin) 추구는 노동시장에 취약계층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이중구조화로 이어졌다.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고용주도성장론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분배 부담을 줄이는 기반으로 고용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고용률을 실제 증가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고용구조 개선, 장시간근로 억제를 병행하지 않은 고용률 증가 정책은 분배 개선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2001~11년 동안 32개국의 고용률과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제시한 이병희 외(2013)에 따르면, 고용률과 임금불평등 간은 약한 음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증가가 노동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내부자-외부자론은 내부자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조합의 편향된 규제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확산이라는 주변 노동시장의 확대에 주목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평등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내부로 단순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격차의 더 큰 원인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물시장에서의 격차, 노동과 자본 간 분배의 불균형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병희 외(2014)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더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 저축의 증가는 가계소득의 부진과 소비의 위축을 초래한다(김영태·박진호, 2012).

유연안전성론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복지의 교환을 주장한다. 전병유(2011)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유연안전성이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강조한다. 첫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여 왔으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통한 인력조정 방식이 외환위기 이후 정착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필요가 크지 않다. 둘째,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 보호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 보호된 영역의 고용안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하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우선,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전망도 불확실하다. 규제 완화와 감세도 기대와 달리 투자가 아니라 기업저축의 증가로 이어졌다. 가계 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유지하는 정책도 지속할 수 없다.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노동소득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률 제고와 노동소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임금이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낮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임금은 노동비용뿐만 아니라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재구축하여 총수요와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과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억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격차가 대·중소기업 간 생산물시장에서의 격차,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의 통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LO의 Berg(2015)는 노동시장제도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조합 역할의 확대도 필요하다. IMF의 Jaumotte and Buitron(2015)는 지난 30년 동안의 노조 조직률 약화가 불평등 증가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발전이나 세계화, 불평등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되어 온 금융의 규제완화,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의 하락 등을 통제하고서도 노조 조직률의 약화가 최상위 10% 소득점유율 증가분의 절반을 설명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Gautié and Schmitt(2010)는 노동시장제도

의 사회적 통합성(social inclusiveness)이 높을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의 통합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적 보호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아웃소싱, 장시간노동을 과잉 추구하는 시장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기능 부진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법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일자리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도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식 고용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경력이 없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해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 지원을 연계하는 보완적인 고용안전망(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두용·이상호(2013), 「부유한 기업, 가난한 가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현상과 원인 및 함의」, 『국제경제연구』 19(2), pp.1~35.
- 강병구(2014),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 주최, 제정과탄·서민증세 점검 긴급토론회 발표문.
- 곽태원(2000), 『조세론』, 법문사.
- 구인회·임세희(2007),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 악화의 요인분해: 개인 근로소득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가을, pp.5~27.
- 국세청(2013),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
- _____(2014), 『2014 국세통계연보』.
- _____, 『국세통계연보』.
- 국토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기획재정부(2014), 『조세개요』.
- 김낙년(2013), 「한국의 소득분배」, 낙성대 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2013-06.
- 김상조(2015),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13년)」, 경제개혁리포트 2015-1호.
- 김수정(2014),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시뮬레이션 방법의 적용」, 『조사연구』 15(1), pp.93~122.
- 김영태·박진호(2012), 「소득계정으로 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국민계정리뷰』 8, pp.20~52.

- 김유찬(2012), 「이원적소득세(Dual Income Tax)에 대한 평가: 자본소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과연 필요한가?」 『재정학연구』 5(1), pp.67~96.
- 김재진(2013),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조세·재정 브리프』, 2013. 10. 21.
- 노영훈(2012),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연구원.
- 박원석 의원실,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2015. 10. 5.
- 박종규(2014),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한국금융연구원.
- 박형수·박명호·김학수·정재호(2012),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김현숙(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 성재민(2014), 『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우명동(2007), 『조세론』, 도서출판 해남.
- 원승연(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SIES Working Paper Series No.342.
- 이병희(2015a),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노동리뷰』 1월호, pp.25~42.
- _____(2015b), 「대안적 고용모델의 모색」, 『노사공포럼』 33, pp.145~168.
- 이병희·홍민기·이현주·강신욱·장지연(2013),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황덕순·홍민기·오상봉·전병유·이상현(2014),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우·이성립(2002),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7(1), pp.1~28.
- 이필우·유경문(2003), 『조세론』, 법문사.
- 전병유(2011), 「노동-복지의 정합성: 유연안전성을 중심으로」, 장지연 외,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3),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pp.15~40.
- _____ (2014), 「요소소득분배와 가구소득 불평등」, 이병희 외, 『노동소득 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정준호(2014), 「소득-자산의 다중격차: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 pp.1~33.
- 정태인(2014),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새사연.
- 주상영(2014),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한국경제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4. 11. 28.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ecos.bok.or.kr/>
- 홍민기(2014),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 이병희 외,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 홍종학 의원실(2015), 「근로소득, 종합소득,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국세청.
- 황덕순(2011),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경제논집』 50(3), pp.295~337.
- Adler, M. and K. D. Schmid(2012), “Factor Shares and Income Inequ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2002~08,” *Schmollers Jahrbuch* 133(2), pp.121~132.
- Altonji, J. G. and N. Williams(2005), “Do Wages Rise with Job Seniority? A Reassessmen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8(3), pp.370~397.
- Altonji, J. G. and R. A. Shakotko(1987), “Do Wages Rise with Job Senior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54(3), pp.437~459.
- Antón-Sarabia, A.(2005), “Average Effective Tax Rates in Mexico,”

- Economia Mexicana* 14(2), pp.185~215.
- Arcarons, J. and S. Calonge(2015), “Inference Tests for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Suits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3.
- Atkinson, A. B.(2013), “Reducing income inequality in Europe,” *IZA Journal of European Labor Studies* 2(12).
- _____(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장경덕 옮김,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항아리.
- Atkinson, A. B. and C. Lakner(2015), “Wages, Capital and Top Incomes : The Factor Income Composition of Top Incomes in the USA, 1960–2005,” Working Paper.
- Berg, A. G. and J. D. Ostry(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1/08.
- Berg, J.(2015), *Labour Markets, Institutions and Inequality: Building just societies in the 21st Century*, Edward Elgar and ILO.
- Bonnet, O., P. Bono, G. Chapelle, and E. Wasmer(2014), “Does Housing Capital Contribute to Inequality? A Comment on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21st Century”, SciencesPo. Discussion Paper 2014-07.
- Braconier H. and J. Ruiz-Valenzuela(2014), “Gross Earning Inequalities in OECD Countries and Major Non-member Economics: Determinants and Future Scenario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ECO/WKP(2014)35.
- Burtless, G.(1999),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pp.853~865.
- Cancian, M. and D. Reed(1999), “The Impact of Wives’ Earnings on Income Inequality: Issues and Estimates,” *Demography* 36,

- pp.173~184.
- Carey, D. and J. Rabesona(2002), "Tax Ratios on Labour and Capital Income and on Consumption," *OECD Economic Studies* No.35.
- Chamley, C.(1986),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GE with Infinite Lives," *Econometrica* 54(3), pp.607~622.
- Cecchi, D. and C. Garcia-Penalosa(2010),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OECD," *Economica* 77(307), pp.413~450.
- Cingano, F.(2014),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63.
- Daly, M. C. and R. G. Valletta(2006),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Effects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r," *Economica* 73, pp.75~98.
- Daudey, E. and C. Garcia-Penalosa(2007), "The Personal and the Factor Distributions of Income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3(5), pp.812~829.
- DiNardo, J., N. M. Fortin, & T. Lemieux(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pp.1001~1044.
- Dustmann, C. and S. C. Pereira(2008), "Wage Growth and Job Mobility i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1(3), pp.374~393.
- Erosa, A. and M. Gervais(2002), "Optimal Taxation in Life-Cycle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05(2), pp.338~369.
- Findeisen, S. and D. Sachs(2014), "Efficient Labor and Capital Income Taxation over the Life Cycle," Working Paper 14-17, University of Mannheim/Department of Economics.
- Fräßdorf, A., M. Grabka, and J. Schwarze(2011), "The Impact of Household Capital Income on Income Inequality: A Factor

-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UK, Germany and the US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1), pp.35~56.
- Fisher, I.(1906), *The Nature of Capital and Income*, New York: Macmillan.
- García-Penalosa, C. and E. Orgiazzi(2013), “Factor Components of Inequality: A Cross-Country Stud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9(4), pp.689~727.
- Gautié, J. and J. Schmitt(2010), *Low-Wage Work in the Wealthy World*,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Goglio, Alessandro and Paul Swaim(2013), “Policies to Tackle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KDI-OECD Joint Conference on Korea’s Social Policies, Seoul, 5 February 2013.
- Gollin, D.(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458~474.
- Gordon, R.(1986), “Taxation of Investment and Savings in a World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76(5), pp.1086~1102.
- Haig, R. M.(1921), “The Concept of Income: Economic and Legal Aspects,” in R.M. Haig (ed.), *The Federal Income Tax*,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ll, R. E. and A. Rabushka(1995), *The Flat Tax*, Second Editio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Hamilton, J.(1987), “Optimal Wage and Income Taxation under Uncertaint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8, pp.373~388.
- Harding, M.(2013), “Taxation of Dividend, Interest, and Capital Gain Income,”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19.
- Hlasny, V. and P. Verme(2015), “Top Incomes and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Correction Methods Using Egyptian, EU and US Survey Data,” Paper presented to 6th ECINEQ Meeting, July 13, 2015.
- Homburg, S.(2014), “Critical Remarks on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Discussion Paper 530, Institute of

- Public Economics, Leibniz University of Hannover.
- ILO(2012), *Global Wage Report 2012/13: Wages and Equitable Growth*, Geneva : ILO.
- _____ (2015), *Global Wage Report 2014/15: Wages and income inequality*.
- ILO · IMF · OECD · WB(2015),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income shares in G20 countries: Trends, Impacts and Causes,” Report prepared for the G20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s Meeting and Joint Meeting with G20 Finance Ministers (Ankara, Turkey, 3-4 September 2015).
- Jacobson, M. and F. Occhino(2012), “Labor’s declining share of income and rising inequalit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Economic Commentary.
- Jaumotte, F. and C. S. Buitron(2015), “Inequality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No.15-14.
- Karoly, L. A. and G. Burtless(1995), “Demographic Change, Rising Earnings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ll-Being, 1959~1989,” *Demography* 32, pp.379~405.
- Knibbe, M.(2014), “The Growth of Capital: Piketty, Harrod-Domar, Solow and the Long Run Development of the Rate of Interest”, *Real-world Economics Review* 69.
- Lavoie, M. and E. Stockhammer(2013), *Wage-led Growth: An Equitable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Palgrave Macmillan and ILO.
- Lee, S. and G. Rusconi(2014), “The Dimensions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ment, trends and linkages,” Paper presented at the KIEP-ILO-SNU Joint Conference, Dec 10, 2014.
- Lemieux, T., W. B. MacLeod, and D. Parent(2009), “Performance Pay and Wage Inequ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1), pp.1~49.
- Lerman, R. and S. Yitzhaki(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pp.151~156.
- Mendoza, E. G., A. Razin, and L. L. Tesar(1994), “Effective Tax Rates in Macroeconomics: Cross-Country Estimates of Tax Rates on Factor Incomes and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No. 4864.
- Moriguchi, C. and E. Saez(2008), “The Evolution of Income Concentration in Japan, 1886-2005: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pp.713~734.
- OECD(2001), “Tax Ratios: A Critical Survey,” *OECD Tax Policy Studies*, No.5.
- _____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 OECD.StatExtracts.(2015.2.21.)
- Ostry, J. D., A. Berg, and C. Tsangarides(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14/02.
- Park, N.(1991), “Steady State Solutions of Optimal Tax Mixes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 pp.227~246.
- Pechman, J. A.(1977),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A Report of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Fund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Piketty, T.(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homas, Emmanuel Saez, and Stefaine Stantcheva(2014), “Optimal Taxation of Top Labor Incomes: A Tale of Three Elasticit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1).
- Piketty, T. and G. Zucman(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 - 201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3), pp.1255~1310.

- Rehm, M., K. D. Schmid, and D. Wang(2014), “Why has inequality in Germany not risen?,” ECINEQ Working Paper Series 2014-333.
- Ryan, P.(1996), “Factor Shares and Inequality in the UK,”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2(1), pp.106~126.
- Schanz, G.(1896), “Der Einkommensbegriff und die Einkommensteuergesetze,” *FinanzArchive* 13(1), pp.1~87.
- Schlenker, E. and K. Schmid(2014), “Capital income shares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ECINEQ Working Paper Series 2014-329.
- Shorrocks, A. F.(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1), pp.193~211.
- Simons, H. C.(1938), *Personal Income Taxation: The Definition of Income as a Problem of Fiscal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rensen, P. B.(2007), “Can Capital Income Taxes Survive? And Should They?,” *CESifo Economic Studies* 53.
- _____(2010), “Dual Income Taxes: A Nordic Tax System,” I. Clause, N. Gemmell, M. Harding, and D. White (eds.), *Tax Reform in Open Economies*, Edward Elger.
- Stiglitz, J. E.(2015), *Rewriting the Rules on the American Economy: An agenda for growth and shared prosperity*, Roosevelt Institute.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 van Treeck, T.(2015), “Inequality, the crisis, and stagnation,” *European Journal of Economics and Economic Policies: Intervention* 12(2), pp.158~169.
- Wang, C. and K. Caminada(2011), “Disentangl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Social Transfers and Taxes in 36 LIS Countries,” LIS Working Paper Series No.567.

◆ 執筆陣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 발행연월일 |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방 하 남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등록 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 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5 정가 7,000원

ISBN 979-11-260-0024-1